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377호 2019년 10월 24일(목)

경 상 북 도

■ 고 시

○ 도지정문화재 지정해제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9-314호) ····· 6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하천구역 결정 등)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9-315호) ····· 8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9-316호) ····· 35

○ 의성군 의성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9-317호) ····· 36

○ 의성군 봉양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9-318호) ····· 57

○ 의성군 단밀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9-319호) ····· 78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9-320호) ····· 97

○ 각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9-321호) ····· 98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9-322호) ····· 100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9-323호) ····· 106

■ 공 고

○ 경상북도 금고 지정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9-1707호) ····· 108

○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9-1708호) ····· 109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양도·양수 등록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19-1709호) ····· 110

시 군

■ 고 시

○ 경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경주시 고시 제2019-166호) ····· 112

○ 영주 도시계획시설사업(가흥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19-1033호) ····· 114

○ 영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고시 제2019-104호) ····· 118

○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9-170호) ····· 120

○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9-171호) ····· 131

■ 공 고

○ 안동 도시계획시설(안교어린이공원) 사업 공사완료 공고
(안동시 공고 제2019-1921호) ····· 145

○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영덕군 공고 제2019-989호) ····· 147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604호) ····· 150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605호) ····· 151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606호) ····· 152

◈◈◈

경상북도 고시 제2019-314호

도지정문화재 지정해제 고시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 문화유산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정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 도보에 고시합니다.

2019. 10. 24.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정해제내용

일련번호	지정종별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소재지	지정일자	해제사유(승격일자)	지정해제일
1	문화재자료 제350호	관음리 석조반가사유상(觀音里 石造半跏思惟像)	1구	국 유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산60	1998.4.13	유형문화재 승격 (2019.10.21)	2019. 10.21

2. 지정해제사유

○ 관음리 석조반가사유상

이 불상은 약 188㎝ 높이의 자연석 서쪽면에 부조(浮彫)된 반가사유상이다. 반

가사유상의 왼쪽 다리 일부와 대좌 하부는 지표 아래에 묻혀 있고 전체적으로 표면 마모가 심한 편이다. 정면 向을 취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턱에, 왼손은 반가좌(半跏坐)한 오른쪽 발목에 두고 있다. 조성 시기는 불상의 표현기법 등으로 보아 7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된다.

형식의 희소성, 불상의 입지, 제작시기 등을 고려할 때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유형문화재 제548호 “문경 관음리 석조반가사유상”으로 승격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지정을 해제한다.

3. 지정해제일 : 2019. 10. 21.

4. 연 락 처

○ 전 화 : 054-880-3171 (FAX 054-880-3179)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고시 제2019-315호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하천구역 결정 등) 변경 고시

지방하천 동천 등 10개 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같은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지정(변경), 같은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하천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분석과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하천관리방안의 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현황

수계	하천명	유역 면적 (㎢)	연평균 강우량 (㎜)	수자원 총 량 (백만㎥)	유출량(백만㎥)			손실량 (백만㎥)
					홍수시	평상시	계	
태화강	동천	82.62	1,254.40	103.64	41.44	20.25	61.69	41.95
형산강	화대천	23.51	1,140.07	26.80	8.55	5.18	13.73	13.07
	내단천	13.56	1,140.07	15.46	4.93	2.98	7.91	7.55
낙동강	위양천	14.67	1,007.02	14.77	4.91	3.02	7.93	6.84
	장천	61.60	1,188.16	73.19	30.20	13.06	43.26	29.93
	노림천	26.06	1,043.53	27.19	10.01	5.11	15.12	12.07
	현동천	104.39	1,190.14	124.24	52.87	16.70	69.57	54.67
	덕신천	28.08	1,054.21	29.60	12.94	4.05	16.99	12.61
	가천	41.25	1,054.21	43.49	19.00	5.97	24.97	18.52
낙동강 동해권	신광천	29.37	1,133.35	33.29	10.25	6.04	16.29	17.00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계획규모 (년)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동천	과업 종점	80	829	830
	모화천(소)합류전	80	793	795
	석계천(소)합류전	80	597	600
	구어천(소)합류전	80	538	540

하천명	주요지점명	계획규모 (년)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동천	입실천 합류전	80	475	475
	개곡천(소)합류전	80	372	375
	뒷천(소)합류전	80	272	275
	대성천(소)합류전	80	196	200
	과업 시점	80	84	85
화대천	과업 종점	80	245	245
	화대교 지점	80	223	225
	대봉교 지점	80	219	220
	과업 시점	80	205	205
내단천	과업 종점	80	188	170
	무명교 지점	80	160	130
	배나무골천 합류전	80	132	100
	과업 시점	80	122	95
위양천	과업 종점	80	83	75
	위양교 지점	80	83	70
	과업 시점	80	79	65
장천	과업 종점	80	347	350
	백두점천(소)합류전	80	345	345
	화산천(소)합류전	80	320	320

하천명	주요지점명	계획규모 (년)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장천	운평천(소)합류전	80	248	250
	유곡교 지점	80	248	250
	무명1천 합류전	80	240	240
	잿마천합류전	80	213	215
	무명2천 합류전	80	165	165
	무명3천 합류전	80	129	130
	과업 시점	80	64	65
노림천	과업 종점 (미천(지방) 합류점)	80	242	245
	토갓천(소) 합류전	80	157	160
	내리천(소) 합류전	80	96	100
	음지골 합류전	80	96	100
	벽수저수지 합류전	80	71	75
	현내골 합류전	80	52	55
	과업 시점 (장수저수지 지점)	80	50	50
현동천	과업종점 (낙동강(지방) 합류점)	80	1,027	1,030
	자작정천(소) 합류전	80	1,026	1,030
	시라리천(소) 합류전	80	984	985

하천명	주요지점명	계획규모 (년)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현동천	홍재천(소) 합류전	80	649	650
	갈밭골(세) 합류전	80	638	640
	굴골(세) 합류전	80	637	640
덕신천	과업종점 (낙동강(지방) 합류점)	80	159	160
	오동골(세) 합류전	80	156	160
	마이골(세) 합류전	80	132	135
	제비골(세) 합류전	80	121	125
	도시내골(세) 합류전	80	108	110
	싸리내골(세) 합류전	80	88	90
가천	과업종점 (낙동강(지방) 합류점)	80	214	215
	공이골천(소) 합류전	80	203	205
	살래천(소) 합류전	80	197	200
	미잠천(소) 합류전	80	192	195
	두수천(소) 합류전	80	181	185
	용구천(소) 합류전	80	157	160
	두루미천(소) 합류전	80	149	150
신광천	과업종점 (냉천(지방) 합류점)	80	405	370

하천명	주요지점명	계획규모 (년)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신광천	고락골세천 합류전	80	395	355
	오어지 상류	50	140	140
	항사들세천 합류전	50	125	125
	세천 합류전	50	120	120
	과업시점	50	115	115

- 내단천은 상류에 위치한 용천저수지의 홍수조절효과를 고려하여 기본홍수량에서 홍수조절량을 감한 계획홍수량을 하도내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음.
- 위양천은 상류에 위치한 개천저수지의 홍수조절효과를 고려하여 기본홍수량에서 홍수조절량을 감한 계획홍수량을 하도내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음.
- 신광천은 중류에 위치한 오어저수지의 홍수조절효과를 고려하여 오어저수지 하류에는 기본홍수량에서 홍수조절량을 감한 계획홍수량을 하도내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오어저수지 상류에서는 홍수량을 전량 하도내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음.
- 동천, 화대천, 장천, 노림천, 현동천, 덕신천, 가천은 지역별 홍수배분 계획은 없으며, 홍수량을 전량 하도내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음.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동천	No.0+000	과업 종점	1,108	829	1,080	830	40.10	39.62	159	146
	No.0+102	모화천(소)합류전	1,000	793	1,000	795	40.56	40.03	148	158
	No.1+798	석계천(소)합류전	714	597	714	600	46.30	45.70	95	99
	No.4+183	구어천(소)합류전	–	538	–	540	56.96	56.92	90	99
	No.5+388	입실천 합류전	496	475	496	475	62.97	63.16	59	64
	No.7+163	개곡천(소)합류전	332	372	332	375	71.72	71.47	73	77
	No.7+969	뒷천(소)합류전	221	272	221	275	73.28	73.71	46	50
	No.9+874	대성천(소)합류전	135	196	135	200	82.45	82.65	53	41
	No.12+047	과업 시점	–	84	–	85	96.42	97.03	28	29
화대천	No.0+000	과업 종점	275	245	275	245	34.71	34.70	60	61
	No.1+091	화대교 지점	239	223	239	225	44.45	44.29	60	56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화대천	No.2+089	대봉교 지점	-	219	-	220	55.73	55.73	59	57
	No.3+237	과업 시점	206	205	206	205	67.99	66.72	18	19
내단천	No.0+000	과업 종점	156	188	156	170	23.49	24.66	56	56
	No.1+702	무명교 지점	-	160	-	130	39.56	39.57	35	34
	No.2+693	배나무골천 합류전	-	132	-	100	49.09	48.56	22	21
	No.3+686	과업 시점	91	122	91	95	60.71	61.25	18	20
위양천	No.0+100	과업 종점	-	83	-	75	-	50.26	-	52
	No.0+888	위양교 지점	-	83	-	70	-	50.30	-	36
	No.1+750	과업 시점	-	79	-	65	-	50.68	-	25
장천	No.0+000	과업 종점	255	347	255	350	49.19	46.29	80	85
	No.1+594	백두점천(소)합류전	240	345	240	345	49.47	48.20	73	75
	No.2+696	화산천(소)합류전	220	320	220	320	51.57	51.46	82	84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장천	No.4+792	운평천(소)합류전	170	248	170	250	58.04	58.37	117	125
	No.6+270	유곡교 지점	-	248	-	250	62.88	62.98	77	72
	No.7+945	무명1천 합류전	-	240	-	240	72.05	72.23	27	82
	No.8+648	잿마천합류전	125	213	125	215	78.33	78.51	34	44
	No.10+232	무명2천 합류전	-	165	-	165	95.94	95.65	21	24
	No.10+733	무명3천 합류전	-	129	-	130	103.91	103.46	21	24
	No.11+131	과업 시점	-	64	-	65	110.76	111.01	21	18
노림천	No.0+100	과업 종점 (미천(지방) 합류점)	168	242	170	245	87.07	87.74	44	46
	No.1+587	토갓천(소) 합류전	113	157	115	160	95.42	96.65	34	32
	No.1+790	내리천(소) 합류전	74	96	75	100	97.13	98.08	33	32
	No.2+987	음지골 합류전	67	96	70	100	107.29	107.44	30	27
	No.4+180	벽수저수지 합류전	49	71	50	75	123.47	124.00	33	32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노림천	No.4+981	현내골 합류전	34	52	35	55	133.50	134.46	61	19
	No.5+828	과업 시점 (장수저수지 지점)	30	50	35	50	155.39	155.59	30	27
현동천	No.0+000	과업 종점 (낙동강(지방) 합류점)	-	1,027	-	1,030	-	294.30	-	62
	No.2+973	자작정천(소) 합류전	-	1,026	-	1,030	-	313.65	-	52
	No.3+200	시라리천(소) 합류전	-	984	-	985	-	314.46	-	64
	No.6+400	홍재천(소) 합류전	-	649	-	650	-	343.16	-	35
	No.8+533	갈밭골(세) 합류전	-	638	-	640	-	363.12	-	29
	No.10+700	굴골(세) 합류전	-	637	-	640	-	393.48	-	29
덕신천	No.0+000	과업 종점 (낙동강(지방) 합류점)	-	159	-	160	-	265.93	-	28
	No.2+000	오동골(세) 합류전	-	156	-	160	-	300.65	-	24
	No.3+700	마이골(세) 합류전	-	132	-	135	-	345.43	-	27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덕신천	No.4+600	제비골(세) 합류전	-	121	-	125	-	367.05	-	14
	No.5+500	도시내골(세) 합류전	-	108	-	110	-	387.27	-	14
	No.6+200	싸리내골(세) 합류전	-	88	-	90	-	405.53	-	20
가천	No.0+000	과업 종점 (낙동강(지방) 합류점)	-	214	-	215	-	244.88	-	39
	No.2+177	공이골천(소) 합류전	-	203	-	205	-	276.66	-	24
	No.2+800	살래천(소) 합류전	-	197	-	200	-	290.85	-	29
	No.4+400	미잠천(소) 합류전	-	192	-	195	-	326.94	-	31
	No.4+974	두수천(소) 합류전	-	181	-	185	-	338.08	-	22
	No.5+288	용구천(소) 합류전	-	157	-	160	-	344.78	-	23
	No.7+500	두루미천(소) 합류전	-	149	-	150	-	395.60	-	38
신광천	No.0+000	과업종점 (냉천(지방) 합류점)	400	405	400	370	41.92	41.30	107	119
	No.1+300	고락골세천 합류전	380	395	380	355	56.82	56.30	53	44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신광천	No.4+000	오어지 상류	140	140	140	140	107.23	107.69	126	120
	No.5+600	항사들세천 합류전	120	125	120	125	127.20	126.99	28	29
	No.6+700	세천 합류전	100	120	100	120	150.14	150.67	18	12
	No.8+263	과업시점	85	115	85	115	201.73	201.06	20	17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구간 또는 측점	지구 구분	비고
동천	No.0+000 ~ No.12+047(우안), No.0+788 ~ No.12+047(좌안)	복원지구	
	No.0+000 ~ No.0+788(좌안)	친수지구	근린 친수지구
화대천	No.0+000 ~ No,3+237(좌 · 우안)	복원지구	
내단천	No.0+000 ~ No,3+783(좌 · 우안)	복원지구	
위양천	No.0+000 ~ No,1+750(좌 · 우안)	복원지구	
장천	No.0+000 ~ No,2+094(좌 · 우안)	보전지구	일반 보전지구
	No.2+094 ~ No,11+131(좌 · 우안)	복원지구	
노림천	No.0+000 ~ No.0+522(좌안), No.0+000 ~ No.0+339(우안), No.0+806 ~ No.5+532(우안), No.1+186 ~ No.4+507(좌안), No.5+090 ~ No.5+828(좌안)	복원지구	
	No.0+339 ~ No.0+806(우안), No.0+522 ~ No.1+186(좌안), No.4+507 ~ No.5+090(좌안), No.5+532 ~ No.5+828(우안)	보전지구	일반 보전지구
현동천	No.0+000 ~ No.0+500(좌안), No.0+000 ~ No.0+875(우안), No.2+225 ~ No.2+730(우안), No.4+011 ~ No.5+449(좌안), No.4+646 ~ No.5+089(우안)	보전지구	일반 보전지구
	No.6+400 ~ No.9+450(좌 · 우안)	보전지구	특별 보전지구

하천명	구간 또는 측점	지구 구분	비고
현동천	No.0+500 ~ No.3+755(좌안), No.0+875 ~ No.2+225(우안), No.2+730 ~ No.4+386(우안), No.5+449 ~ No.5+961(좌안), No.5+700 ~ No.6+400(우안), No.5+961 ~ No.6+400(좌안), No.9+450 ~ No.12+375(좌 · 우안)	복원지구	
	No.4+386 ~ No.4+646(우안), No.5+089 ~ No.5+700(우안)	친수지구	친수 거점지구
	No.3+755 ~ No.4+011(좌안)	친수지구	근린 친수지구
덕신천	No.0+807 ~ No.3+010(좌안), No.1+208 ~ No.2+310(우안), No.2+375 ~ No.2+867(우안), No.3+195 ~ No.7+940(좌안), No.3+638 ~ No.5+205(우안), No.5+370 ~ No.6+560(우안), No.6+605 ~ No.7+432(우안), No.7+622 ~ No.7+940(우안)	보전지구	일반 보전지구
	No.0+000 ~ No.0+807(좌안), No.0+000 ~ No.1+208(우안), No.2+310 ~ No.2+375(우안), No.2+867 ~ No.3+638(우안), No.3+010 ~ No.3+195(좌안), No.5+205 ~ No.5+370(우안), No.6+560 ~ No.6+605(우안), No.7+432 ~ No.7+622(우안)	복원지구	
가천	No.0+000 ~ No.0+254(우안), No.0+372 ~ No.2+000(좌안), No.0+694 ~ No.0+873(우안), No.1+263 ~ No.1+444(우안),	보전지구	일반 보전지구

하천명	구간 또는 측점	지구 구분	비고
가천	No.3+192 ~ No.4+400(우안), No.3+653 ~ No.4+100(좌안), No.5+651 ~ No.6+152(우안), No.6+251 ~ No.7+100(우안), No.5+524 ~ No.6+449(좌안), No.6+596 ~ No.7+100(좌안)		
가천	No.0+000 ~ No.0+372(좌안), No.0+254 ~ No.0+694(우안), No.0+873 ~ No.1+263(우안), No.1+444 ~ No.3+192(우안), No.2+000 ~ No.3+653(좌안), No.4+100 ~ No.5+524(좌안), No.4+400 ~ No.5+651(우안), No.6+152 ~ No.6+251(우안), No.6+449 ~ No.6+596(좌안), No.7+100 ~ No.8+010(좌 · 우안)	복원지구	
신광천	No.3+256~No.5+500(우안), No.3+256~No.5+800(좌안), No.5+800~No.8+263(우안), No.6+000~No.7+300(좌안), No.7+532~No.8+236(좌안)	보전지구	특별 보전지구
	No.0+000~No.3+256(좌안), No.0+000~No.3+256(우안), No.5+500~No.5+800(우안), No.5+800~No.6+000(좌안), No.7+300~No.7+532(좌안)	복원지구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하천과) 및 하천의 관할지역인 경주시

(건설과), 포항시(안전관리과), 의성군(안전건설과), 상주시(건설과), 안동시(안전재난과), 봉화군(안전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경상북도 하천과(054-880-4071), 경주시 건설과(054-779-6406), 포항시 안전관리과(054-270-3523), 의성군 안전건설과(054-830-6592), 상주시 건설과(054-537-7558), 안동시 안전재난과(054-840-5387), 봉화군 안전건설과(054-679-6512) 끝.

2.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지방하천 동천 등 10개 하천의 지정(변경)을 「하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 합니다.

□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변경 사항

하천명	하천 등급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동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경북 경주시 외동읍 (울산,경북 도경계)	12.40	울산광역시 동천과 중복구간을 제외하여 종점변경 하천연장 조정
		변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636-4번지선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75번지선 (울산,경북 도경계)	12.05	

하천명	하천 등급	당초 변경	구간			변경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화대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미현리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천(지방) 합류점	4.10	기동저수지 여수로 종점으로 기점변경하여 하천연장 조정
		변경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484-1번지선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1088-127번지선 기계천(지방) 합류점	3.24	
내단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천(지방) 합류점	4.70	용천저수지 여수로 종점으로 기점변경하여 하천연장 조정
		변경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851번지선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1088-280번지선 기계천(지방) 합류점	3.78	
위양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의성군 안계면 도덕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위천(지방) 합류점	5.40	개천저수지 여수로 종점으로 기점변경하여 하천연장 조정
		변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345-1번지선	경북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730번지선 위천(지방) 합류점	1.75	

하천명	하천 등급	당초 변경	구간			변경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장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강(국가) 합류점	11.60	금회 현장조사 및 현황 측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낙동강 합류부 연장 조정
		변경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 192번지선	경북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990-93번지선 낙동강(국가) 합류점	11.13	
노림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안동시 남선면 외하리	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미천합류점)	5.85	금회 현장조사 및 현황 측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연장 조정
		변경	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319-1번지선	경북 안동시 남선면 외하리 산60번지선 미천(지방) 합류점	5.83	
현동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경북 봉화군 소천면 낙동강(지방) 합류점	15.40	기 고시된 시점부는 산지와 접해 있는 계곡형태로 별도의 보호구역이 없어 지방하천 제외
		변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98번지선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70-7번지선 낙동강(지방) 합류점	12.28	

하천명	하천 등급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덕신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경북 봉화군 소천면 낙동강(지방) 합류점	8.50	금회 현장조사 및 현황 측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연장 조정
		변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95번지선 교량지점	경북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616-1번지선 낙동강(지방) 합류점	7.94	
가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경북 봉화군 소천면 낙동강(지방) 합류점	6.00	기고시 시점으로부터 법정하천으로 미지정된 소하천 합류부까지 하천연장 조정
		변경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220번지선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1212번지선 낙동강(지방) 합류점	8.01	
신광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산111번지선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383번지선 냉천(지방2) 합류점	7.55	금회 현장조사 및 현황 측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연장 조정
		변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475번지선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1번지선 냉천(지방) 합류점	7.50	

□ 지정·변경일 : 고시일과 같음

3. 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상북도(하천과) 및 하천의 관할지역인 경주시(건설과), 포항시(안전관리과), 의성군(안전건설과), 상주시(건설과), 안동시(안전재난과), 봉화군(안전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하천구역의 결정 사항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동천	지방하천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636-4번지선	경북 경주시 외동읍모화리 175번지선 (울산,경북 도경계)	12.05	1,191,881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계획(변경)
화대천	지방하천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484-1번지선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1088-127번지선 기계천(지방) 합류점	3.24	259,002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계획(변경)
내단천	지방하천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851번지선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1088-280번지선	3.78	204,040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기계천(지방) 합류점			
위양천	지방 하천	경북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345-1번지선	경북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730번지선 위천(지방) 합류점	1.75	117,435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 계획수립
장천	지방 하천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 192번지선	경북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990-93번지선 낙동강(국가) 합류점	11.13	1,051,492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 계획(변경)
노림천	지방 하천	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319-1번지선	경북 안동시 남선면 외하리 산60번지선 미천(지방) 합류점	5.83	216,129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 계획(변경)
현동천	지방 하천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98번지선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70-7번지선 낙동강(지방) 합류점	12.28	620,911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 계획수립
덕신천	지방 하천	경북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95번지선 교량지점	경북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616-1번지선 낙동강(지방) 합류점	7.94	193,262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 계획수립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가천	지방 하천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220번지선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1212번지선 낙동강(지방) 합류점	8.01	260,484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 계획수립
신광천	지방 하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475번지선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1번지선 냉천(지방) 합류점	7.50	816,636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 계획(변경)

나. 하천구역의 지형도면고시 사항

동천, 화대천, 내단천, 위양천, 장천, 노림천, 현동천, 덕신천, 신광천의 하천구역 지형도면고시는 하천구역 결정사항과 동일하며 가천의 지형도면고시는 가천 전체 하천구간(No.0+000 ~ No.8+010, L=8.01㎞) 중 지적 불일치구간(No.2+900 ~ 8+010, L=5.11㎞)을 제외하고 고시함.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지형도면고시(㎡)		
		기 점	종 점	거리 (㎞)	전체 면적	제외 면적	고시 면적
가천	지방 하천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1571번지선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1212번지선 낙동강(지방) 합류점	2.90	260,484	169,975	90,509

붙 임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열람장소 비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경상북도 하천과(054-880-4071), 경주시 건설과(054-779-6406), 포항시 안전관리과(054-270-3523), 의성군 안전건설과(054-830-6592), 상주시 건설과(054-537-7558), 안동시 안전재난과(054-840-5387), 봉화군 안전건설과(054-679-6512) 끝.

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천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홍수관리구역 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상북도(하천과), 경주시(건설과), 포항시(안전관리과), 봉화군(안전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사항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동천	지방 하천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85-1번지선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86-1번지선	0.06	658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 기본계획(변경)
현동천	지방 하천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0-50번지선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70-7번지선	0.14	2,011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 기본 계획수립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현동천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474-2번지선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475-2번지선	0.10	1,525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476-2번지선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474-2번지선	0.20	2,288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478-5번지선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66-1번지선	0.29	3,524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743번지선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103번지선	0.07	1,141	
현동천	지방 하천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369-4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369-4	0.19	834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 기본 계획수립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447-5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440	0.26	5,209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703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457	0.10	1,242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468-2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0.21	3,514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492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492	0.06	301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55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497	0.14	1,224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499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5	0.05	638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512-1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510	0.15	2,740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514-1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514-2	0.15	2,703	
덕신천	지방 하천	경북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879	경북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445	0.11	820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 기본 계획수립
		경북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363	경북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363	0.09	443	
가천	지방 하천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58번지선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 1-2번지선	0.09	1,256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 기본 계획수립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1184번지선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1193번지선	0.12	1,881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212번지선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778번지선	0.17	1,657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1246-1번지선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1245번지선	0.07	1,003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1247번지선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1247번지선	0.05	429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482번지선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2450번지선	0.19	2,815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2394번지선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237번지선	0.08	601	
신광천	지방 하천	경북 포항시 오천읍 항사리 242번지선	경북 포항시 오천읍 항사리 산93번지선	0.159	2,898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 기본계획(변경)

※ 화대천, 내단천, 위양천, 장천, 노림천은 홍수관리구역 지정 없음.

나. 홍수관리구역의 지형도면고시 사항

동천, 현동천, 덕신천, 신광천의 홍수관리구역 지형도면고시는 홍수관리구역 지정 사항과 동일하며 가천의 지형도면고시는 가천 전체 홍수관리구역구간(7개 구간, L=0.77㎞, 9,642㎡)중 지적 불일치구간(2개 구간, L=0.27㎞, 3,416㎡)을 제외하고 고시함.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지형도면고시(㎡)		
		기 점	종 점	거리 (㎞)	전체 면적	제외 면적	고시 면적
가천	지방 하천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58번지선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산 1-2번지선	0.09	1,256	-	1,256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1184번지선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1193번지선	0.12	1,881	-	1,881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212번지선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778번지선	0.17	1,657	-	1,657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1246-1번지선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1245번지선	0.07	1,003	-	1,003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1247번지선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1247번지선	0.05	429	-	429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482번지선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2450번지선	0.19	2,815	2,815	-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2394번지선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237번지선	0.08	601	601	-

붙 임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열람장소 비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경상북도 하천과(054-880-4071), 경주시 건설과(054-779-6406), 포항시 안전관리과(054-270-3523), 봉화군 안전건설과(054-679-6512) 끝.

경상북도 고시 제2019-316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10. 24.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지방 하천 (백운천)	교량 설치	〈인도교〉 L=24.0m, B=3.0m 영구 150㎡ 일시 148㎡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1619-1번지 외 1필지	김천시 시청1길 (신음동)	김천시장 (건설도시 과장)	영구:허가일로 부터 영구 일시:허가일로부터 2020월 1월 31까지

경상북도 고시 제2019 - 317호

의성군 의성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성군 의성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의성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농공단지 일반현황

1. 농공단지 개요 [변경 없음]

○ 명 칭 : 의성농공단지

○ 위 치 : 경북 의성군 의성읍 용연1길 30-5 일원

○ 면 적 : 165,669.5㎡

○ 관리기관 : 의성군수

(단위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면적 (%)	165,669.5 (100.0%)	139,337.1 (84.1%)	3,660.5 (2.2%)	15,733.8 (9.5%)	6,938.1 (4.2%)	

2. 조성목적 [변경 없음]

○ 지형균형 개발로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

○ 농외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농공단지 개발방법 및 기간 [변경 없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거한 공영개발

○ 기 간 : 1988. 8. 24. ~ 2017. 12. 31.

4. 추진경위

○ 1988. 8. 24 : 농공단지 지정

○ 1988. 8. 30 : 농공단지 기본계획 승인

○ 1989. 3. 25 : 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 1989. 11. 20 : 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

○ 2009. 9. 24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고시 제2009-427호)

○ 2010. 5. 24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상북도고시 제2010-201호)

○ 2016. 7. 22 : 의성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의성군고시 제2016-47호)

○ 2017. 8. 4 : 의성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의성군고시 제2017-79호)

○ 2017. 8. 24 : 의성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상북도고시 제2017-235호)

○ 2018. 3. 20 : 의성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의성군고시 제2018-27호)

5. 분양현황 [변경 없음]

용지구분	총면적(㎡)	분 양 현 황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 분 양	계		
계	165,669.5	139,337.1	-	139,337.1	1989.03.25 ~ 2017.12.31.	의성군
산업시설	139,337.1	139,337.1	-	139,337.1		
지원시설	3,660.5	-	-	-		
공공시설	15,733.8	-	-	-		
녹지시설	6,938.1	-	-	-		

6. 입주현황 [변경없음]

구 분	입주업체 수(개)			면 적 (㎡)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변경전	22	-	22	139,337.1	-	139,337.1
2019. 9월 현재	22	-	22	139,337.1	-	139,337.1
향후계획	-	-	-	-	-	-

7. 입지여건 [변경 없음]

시설명		2019. 9월 현재	관리기관
교통	도로	○중앙고속도로 의성IC(10㎞) 이용 ○국도 5호선(대구 ↔ 안동), 28호선(영천 ↔ 상주) ○지방도912호선(단밀 ↔ 사곡), 927호선(구미 ↔ 단양)	
	철도	○중앙선 의성역(10㎞)	
	항공	○대구공항(60㎞) 이용	
	항만	-	
용 수		○생활용수 : 철파배수지에서 300톤/일 공급 ○공업용수 : 자체 지하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	의성군
전 력		○208kW/H	한국전력공사
통 신		○의성전신전화국	한국통신
환 경		○의성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1차 개별처리 후 의성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	의성군

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 지역 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주민 고용으로 농외 소득 증대

○ 단지 내·외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장래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간계획 수립

○ 각 기능간 연계체계를 고려한 공간배치계획 수립으로 단지의 생산성, 쾌적성, 효율성 극대화

2. 농공단지 면적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단위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면적 (%)	165,669.5 (100.0%)	139,337.1 (84.1%)	3,660.5 (2.2%)	15,733.8 (9.5%)	6,938.1 (4.2%)	

3. 입주대상 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 우선순위 [변경]

○ 입주대상 업종 (별표 1) (변경)

■ (기정) : 10.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단,「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 (변경) : 10.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의 경우 신규 및 증설승인 불가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입주대상 제외업종 (기정)

■ 환경영향업종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농공단지 입주 불가 사업장(「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분업

(재활용전문)으로서 위 3가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제외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 폐수배출관련 업종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 5에 해당하는 업종

■ (별표1) 향후계획 입주업종 중 제외업종

○ 입주대상 제외업종 (변경)

■ 환경영향업종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농공단지 입주 불가 사업장(「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수배출관련 업종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 5에 해당하는 업종

■ (별표1) 향후계획 입주업종 중 제외업종

※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 입 주 자 격 (변경)

■ 환경성 및 사업성 적합 업체일 것

■ 별표1 입주제외 대상 업종이 아닐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입주 우선순위 (변경 없음)

■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큰 기업

■ 재무구조가 건실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수출업체를 우선 입주

■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업체

○ 사후관리계획 (변경 없음)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인력수급의 원활한,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기술지도, 가동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

■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행 유도를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

■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예방지도활동 강화

4.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건축물의 범위 [변경]

○ 용지의 용도별 구역

(단위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면적 (%)	165,669.5 (100.0%)	139,337.1 (84.1%)	3,660.5 (2.2%)	15,733.8 (9.5%)	6,938.1 (4.2%)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

■ 산업시설구역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구역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지붕에 한함)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녹지시설구역

- 녹지로 유지 · 관리

5. 업종별 공장의 배치계획 [변경 없음]

○ 소규모 단지이므로 입주 시 적정배치

○ 기존 환경오염이 적은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전문화 유도를 위한 업종 배치

○ 업종별 배치계획 (별표3 참조)

구 분		면적(㎡)	업체수	분양		미분양		비고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산 업 시 설 구 역		139,337.1	22	139,337.1	22	-	-	
10	식료품 제조업	32,374.8	4	32,374.8	4			
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32,039.5	4	32,039.5	4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4,306.7	3	24,306.7	3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841.5	1	4,841.5	1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924.3	1	7,924.3	1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7,259.9	1	7,259.9	1			
28	전기장비 제조업	10,391.1	2	10,391.1	2			
10 20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9,491.8	2	9,491.8	2			
13 25 28	섬유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7,330.0	1	7,330.0	1			
24 27 29	1차 금속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77.5	3	3,377.5	3			

6.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 설치·운용계획 [변경]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단지내 발생 오폐수는 의성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후 일괄 처리

– 공공시설구역내 폐수처리시설용지 감(7,284㎡) 조치

○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 운용계획 (변경)

■ 기본방향

– 생산활동지원 및 공공업무, 편익시설의 공간제공

– 입주기업체의 이용계획이 있을 시 검토 후 결정

– 입주업체간 협의회의 활성화로 협력 및 애로사항 공동해결

■ 지원시설 설치계획

(기 정)

(단 위 : 개, ㎡)

구 분	전 체 면 적		2017. 8. 현재		향 후 계 획	
	시 설 수	면 적	시 설 수	면 적	시 설 수	면 적
총 계	2	1,438.48	1	410.48	1	1,028.00
농공매점	1	410.48	1	410.48	–	–
편의시설	1	1,028.00	–	–	1	1,028.00

(변 경)

(단 위 : 개, ㎡)

구 분	전 체 면 적		2019. 8. 현재		향 후 계 획	
	시 설 수	면 적	시 설 수	면 적	시 설 수	면 적
총 계	1	410.48	1	410.48	–	–
농공매점	1	410.48	1	410.48	–	–

- 공동이용건축물

· 용 도 : 단지를 위한 편익·후생복지시설 부지로 이용

· 개발시기 : 입주기업체협의회 이용계획에 따라 검토결정

· 유치계획 : 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실 및 복지시설, 판매장 등

7. 임금소득, 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변경 없음]

○ 농업 외 수입에 의존하는 농가로 하여금 농외소득의 혜택으로 수입의 안정화 기대

■ 생산 · 일용근로자 지역주민 우선채용

■ 유휴노동력(부녀자 , 노령자, 실습생)의 적극적인 채용

○ 농번기에는 조업방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노사간 화합 및 고용안정의 도모와 농외소득증대 효과의 극대화

○ 지역 원자재의 최대한 활용 : 농 · 식품류 우선공급

8.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인력수급 계획 [변경 없음]

○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입주 업체수	고용 인원(명)			비 고
	계	기능인력	단순노무	
22	185	143	42	

※ 자료출처 : 의성군 경제투자과

○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농공단지 인근지역의 취업가능 인력 현황)

구 분	인 구 수(명)			취업가능인력 (추 정)
	총계	농가인구수	비농가인구수	
의성군	55,888	24,550	31,338	2,700

※ 자료출처 : 의성군 통계연보(2015)

○ 관내 제조업체 현황

구분	계	섬유	금속	화공	비금속 광물	식품	기계	고무 플라스틱	전기 전자	목재 출판	기타
업체수 (개소)	129	11	-	15	27	41	-	6	3	-	26

※ 자료출처 : 의성군 경제투자과

9.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생산·수출증대 및 고용전망

구 분	지 원 내 용
생산 및 수출증대	○ 연도별 · 품목별 생산 · 수출계획 수립 ○ 생산 · 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 · 설명회 등 개최 ○ 품목별 · 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 · 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경영 및 기술 개발 지원사업	○ 공장자동화 유도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구 분	지 원 내 용
	○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운영 자금융자지원	○ 기업 운영자금 부족업체 융자금 추천 지원 - 3억원 까지 융자금 추천 지원(매출규모별 차등지원) - 이자차액 1년간 3%지원(시,도비) - 매월 1회 융자금 추천 지원(설, 추석달은 제외)

○ 사 후 관 리 계 획

구 분	지 원 내 용
안 전 관 리	○ 안전관리 예방점검 ○ 주요시설 경계 및 안전관리시설 확보
토지이용효율 극 대 화	○ 사업부진업체 정상화 추진 ○ 임의양도 및 불법임대 시정 ○ 공장용지 유휴화 방지 및 타용도 사용규제
환 경 관 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환경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
단지방위체계 향 상	○ 단지 방호체계 수립 ○ 지역단위 방위협의체 운영 참여 - 예비군, 민방위대 등 운영기관 협조

10.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변경 없음]

○ 사후관리계획

■ 분양용지 관리

-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 분양용지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분양용지는 취득한 가격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공장 등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
-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 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별도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1차 처리 후 의성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여야 함

■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안전관리,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 기반시설지원

- 농공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 관리근거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과 분양공고문, 분양유의사항, 농공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

1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12.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의성군 경제투자과(☏054-830-65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표 1】

입 주 대 상 업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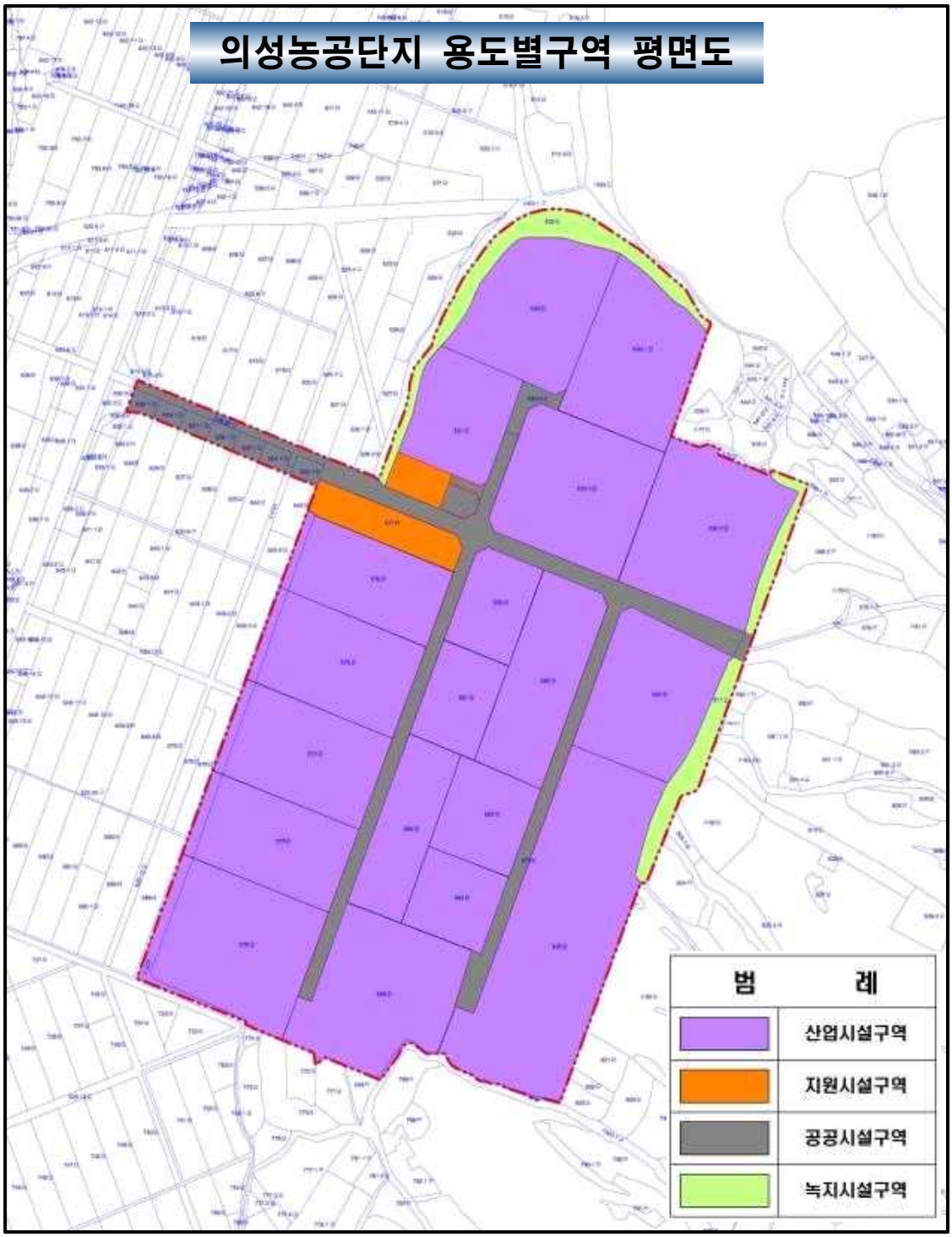
(기 정)

'17. 8. 현재			향 후 계 획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업체수	면 적 (㎡)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입주업종중 제 외 업 종
계	**22**	**139,337.1**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한 제외업종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10. 식료품 제조업	4	32,374.8		
13. 섬유제품 제조업	4	32,039.5		
20.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3	24,306.7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4,841.5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	7,924.3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	7,259.9		
28. 전기장비 제조업	2	10,391.1		
10. 식료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	9,491.8		
13. 섬유제품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1	7,330.0		
24. 1차금속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	3,3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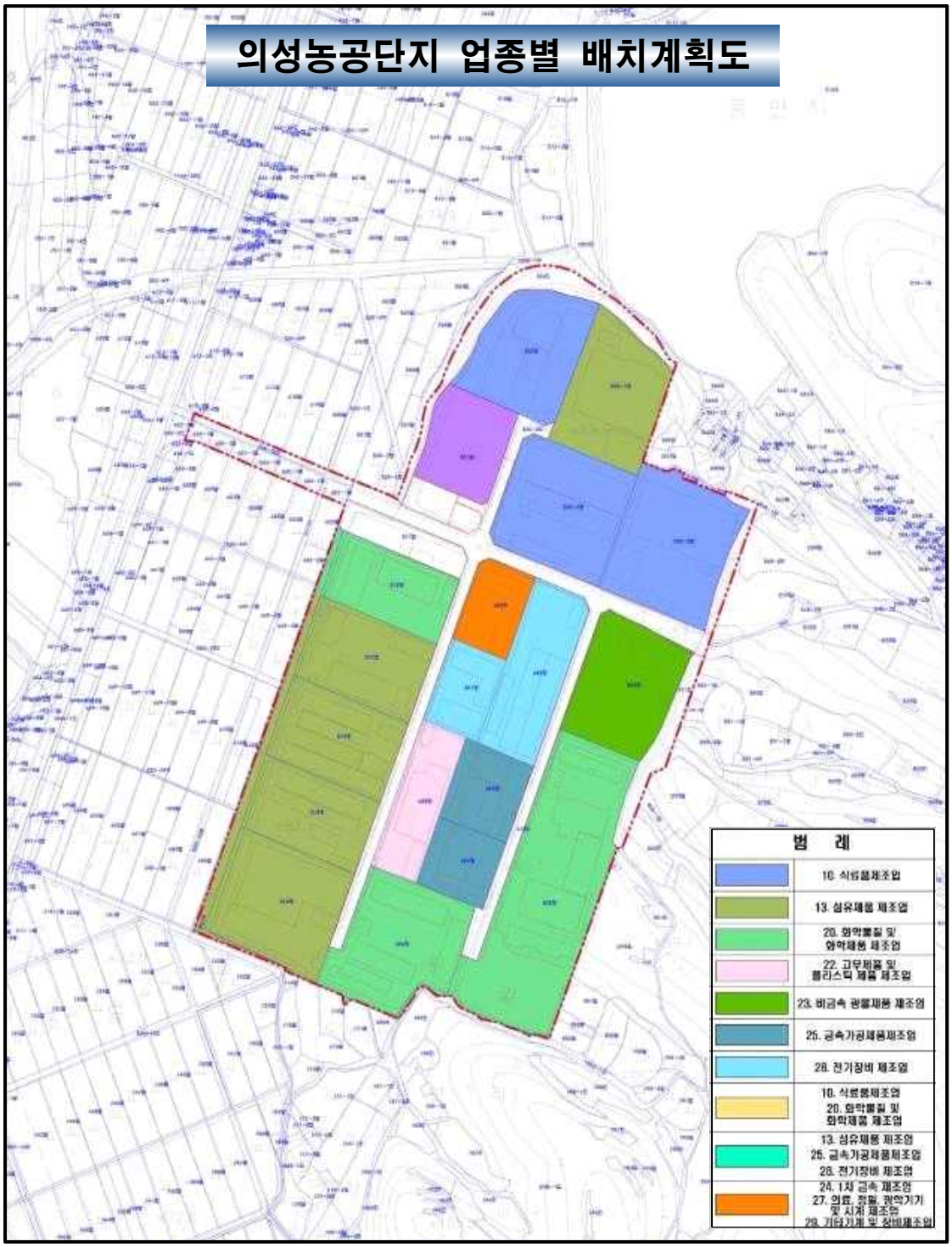
(변 경)

'19. 9. 현재			향 후 계 획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업체수	면 적 (㎡)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입주업종중 제 외 업 종
계	**22**	**139,337.1**	■ 10. 식료품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한 제외업종 ■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4	32,374.8		
13. 섬유제품 제조업	4	32,039.5		
20.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3	24,306.7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4,841.5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	7,924.3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	7,259.9		
28. 전기장비 제조업	2	10,391.1		
10. 식료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	9,491.8		
13. 섬유제품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1	7,330.0		
24. 1차금속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	3,377.5		

【별표 2】 용도별구역 평면도 [변경 없음]



【별표 3】 업종별 배치계획도 [변경 없음]



경상북도 고시 제2019 - 318호

의성군 봉양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성군 봉양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봉양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농공단지 일반현황

1. 농공단지 개요 [변경 없음]

○ 명 칭 : 봉양농공단지

○ 위 치 : 경북 의성군 봉양면 농공마전길 28 일원

○ 면 적 : 194,021.7㎡

○ 관리기관 : 의성군수

(단위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면적 (%)	194,021.7 (100.0%)	158,675.4 (81.8%)	4,875.9 (2.5%)	23,407.7 (12.1%)	7,062.7 (3.6%)	

2. 조성목적 [변경 없음]

○ 지형균형 개발로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

○ 농외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농공단지 개발방법 및 기간 [변경 없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거한 공영개발

○ 기 간 : 1991. 12. 30. ~ 2017. 12. 31.

4. 추진경위

○ 1991. 12. 30 : 농공단지 지정

○ 1992. 12. 31 :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

○ 1992. 12. 31 : 농공단지 조성공사 착공

○ 1994. 7. 30 : 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

○ 2009. 9. 24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고시 제2009-426호)

○ 2010. 5. 24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상북도고시 제2010-200호)

○ 2016. 7. 22 : 봉양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의성군고시 제2016-48호)

○ 2017. 8. 4 : 봉양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의성군고시 제2017-80호)

○ 2017. 8. 24 : 봉양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상북도고시 제2017-236호)

○ 2018. 3. 20 : 봉양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의성군고시 제2018-26호)

5. 분양현황 [변경 없음]

용지구분	총면적(㎡)	분 양 현 황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 분 양	계		
계	194,021.7	158,675.4	-	158,675.4	1992.12.31 ~ 2017.12.31.	의성군
산업시설	158,675.4	158,675.4	-	158,675.4		
지원시설	4,875.9	-	-	-		
공공시설	23,407.7	-	-	-		
녹지시설	7,062.7	-	-	-		

6. 입주현황 [변경-오기수정]

구 분	입주업체 수(개)			면 적 (㎡)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변경전	24	-	24	154,675.4	-	154,675.4
2019. 9월 현재	24	-	24	158,675.4	-	158,675.4
향후계획	-	-	-	-	-	-

7. 입지여건 [변경없음]

시설명		2019. 9월 현재	관리기관
교통	도로	○중앙고속도로 의성IC(10㎞) 이용 ○국도 5호선(대구 ↔ 안동), 28호선(영천 ↔ 상주) ○지방도912호선(단밀 ↔ 사곡), 927호선(구미 ↔ 단양)	
	철도	○중앙선 의성역(10㎞)	
	항공	○대구공항(60㎞) 이용	
	항만	-	
용 수		○생활용수 : 봉양배수지에서 550톤/일 공급 ○공업용수 : 자체 지하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	의성군
전 력		○250㎾/H	한국전력공사
통 신		○의성전신전화국	한국통신
환경		○봉양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1차 개별처리 후 봉양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	의성군

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 지역 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주민 고용으로 농외 소득 증대

○ 농공단지 용도별 면적 구획으로 용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 환경보존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2. 농공단지 면적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단위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면적 (%)	194,021.7 (100.0%)	158,675.4 (81.8%)	4,875.9 (2.5%)	23,407.7 (12.1%)	7,062.7 (3.6%)	

3. 입주대상 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 우선순위 [변경]

○ 입주대상 업종 (별표 1) (변경)

■ (기정) : 10.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단,「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 (변경) : 10.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의 경우 신규 및 증설승인 불가

※ 단,「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입주대상 제외업종 (기정)

■ 환경영향업종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 농공단지 입주 불가 사업장(「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

-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분업(재활용전문)으로서 위 3가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제외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 폐수배출관련 업종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 5에 해당하는 업종

■ (별표1) 향후계획 입주업종 중 제외업종

○ 입주대상 제외업종 (변경)

■ 환경영향업종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농공단지 입주 불가 사업장(「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 폐수배출관련 업종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

5에 해당하는 업종

■ (별표1) 향후계획 입주업종 중 제외업종

※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 입 주 자 격 (변경)

■ 환경성 및 사업성 적합 업체일 것

■ 별표1 입주제외 대상 업종이 아닐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입주 우선순위 (변경 없음)

■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큰 기업

■ 재무구조가 건실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수출업체를 우선 입주

■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업체

○ 사후관리계획 (변경 없음)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인력수급의 원활한,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기술지도, 가동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

■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행 유도를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

■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예방지도활동 강화

4.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건축물의 범위 [변경]

○ 용지의 용도별 구역

(단위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면적 (%)	194,021.7 (100.0%)	158,675.4 (81.8%)	4,875.9 (2.5%)	23,407.7 (12.1%)	7,062.7 (3.6%)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

■ 산업시설구역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구역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지붕에 한함)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녹지시설구역

- 녹지로 유지 · 관리

5. 업종별 공장의 배치계획 [변경 없음]

○ 소규모 단지이므로 입주 시 적정배치

○ 기존 환경오염이 적은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전문화 유도를 위한 업종 배치

○ 업종별 배치계획 (별표3 참조)

구 분		면적 (㎡)	업체수	분양		미분양		비고
				면적 (㎡)	업체수	면적 (㎡)	업체수	
산 업 시 설 구 역		158,675.4	24	158,675.4	24			
10	식료품 제조업	11,747.3	2	11,747.3	2			
13	섬유제품 제조업	25,726.7	4	25,726.7	4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951.3	1	5,951.3	1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455.2	2	10,455.2	2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007.0	1	5,007.0	1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0,875.4	2	20,875.4	2			

구 분		면적 (㎡)	업체수	분양		미분양		비고
				면적 (㎡)	업체수	면적 (㎡)	업체수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8,990.5	6	48,990.5	6			
28	전기장비 제조업	11,126.7	2	11,126.7	2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943.8	2	8,943.8	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553.5	1	5,553.5	1			
13 20	섬유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298.0	1	4,298.0	1			

6.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 설치·운용계획 [변경없음]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단지내 발생 오폐수는 의성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후 일괄 처리

- 공공시설구역내 폐수치리시설용지 감(6,173.6㎡) 조치

○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 운용계획 [변경없음]

■ 기본방향

- 생산활동지원 및 공공업무, 편익시설의 공간제공

- 입주기업체의 이용계획이 있을 시 검토 후 결정

- 입주업체간 협의회의 활성화로 협력 및 애로사항 공동해결

■ 지원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단 위 : 개, ㎡)

구 분	전 체 면 적		2019. 9. 현재		향 후 계 획	
	시 설 수	면 적	시 설 수	면 적	시 설 수	면 적
총 계	1	497.0	1	497.0	-	-
농공매점	1	497.0	1	497.0	-	-

- 공동이용건축물

· 용 도 : 단지를 위한 편익·후생복지시설 부지로 이용

· 개발시기 : 입주기업체협의회 이용계획에 따라 검토결정

· 유치계획 : 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실 및 복지시설, 판매장 등

7. 임금소득, 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변경 없음]

○ 농업외 수입에 의존하는 농가로 하여금 농외소득의 혜택으로 수입의 안정화 기대

■ 생산 · 일용근로자 지역주민 우선채용

■ 유휴노동력(부녀자 , 노령자, 실습생)의 적극적인 채용

○ 농번기에는 조업방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노사간 화합 및 고용안정의 도모와 농외소득증대 효과의 극대화

○ 지역 원자재의 최대한 활용 : 농 · 식품류 우선공급

8.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인력수급 계획 [변경 없음]

○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입주 업체수	고용 인원(명)			비고
	계	기능인력	단순노무	
24	248	193	55	

※ 자료출처 : 의성군 경제투자과

○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농공단지 인근지역의 취업가능 인력 현황)

구 분	인 구 수(명)			취업가능인력 (추 정)
	총계	농가인구수	비농가인구수	
의성군	55,888	24,550	31,338	2,700

※ 자료출처 : 의성군 통계연보(2015)

○ 관내 제조업체 현황

구분	계	섬유	금속	화공	비금속 광물	식품	기계	고무 플라스틱	전기 전자	목재 출판	기타
업체수 (개소)	129	11	-	15	27	41	-	6	3	-	26

※ 자료출처 : 의성군 경제투자과

9.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생산·수출증대 및 고용전망

구 분	지 원 내 용
생산 및 수출증대	○ 연도별 · 품목별 생산 · 수출계획 수립 ○ 생산 · 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 · 설명회 등 개최 ○ 품목별 · 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 · 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경영 및 기술 개발 지원사업	○ 공장자동화 유도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운영 자금융자지원	○ 기업 운영자금 부족업체 융자금 추천 지원 – 3억원 까지 융자금 추천 지원(매출규모별 차등지원) – 이자차액 1년간 3%지원(시,도비) – 매월 1회 융자금 추천 지원(설, 추석달은 제외)

○ 사 후 관 리 계 획

구 분	지 원 내 용
안 전 관 리	○ 안전관리 예방점검 ○ 주요시설 경계 및 안전관리시설 확보
토지이용효율 극 대 화	○ 사업부진업체 정상화 추진 ○ 임의양도 및 불법임대 시정 ○ 공장용지 유휴화 방지 및 타용도 사용규제
환 경 관 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구 분	지 원 내 용
	지방환경관리청 및 환경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
단지방위체계 향 상	○ 단지 방호체계 수립 ○ 지역단위 방위협의체 운영 참여 – 예비군, 민방위대 등 운영기관 협조

10.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변경 없음]

○ 사후관리계획

■ 분양용지 관리

–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 분양용지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분양용지는 취득한 가격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공장 등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

-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 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 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별도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1차 처리 후 의성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여야 함

■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안전관리,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 기반시설지원

- 농공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 관리근거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과 분양공고문, 분양유의사항, 농공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

1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12.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의성군 경제투자과(☏054-830-65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표 1】

입 주 대 상 업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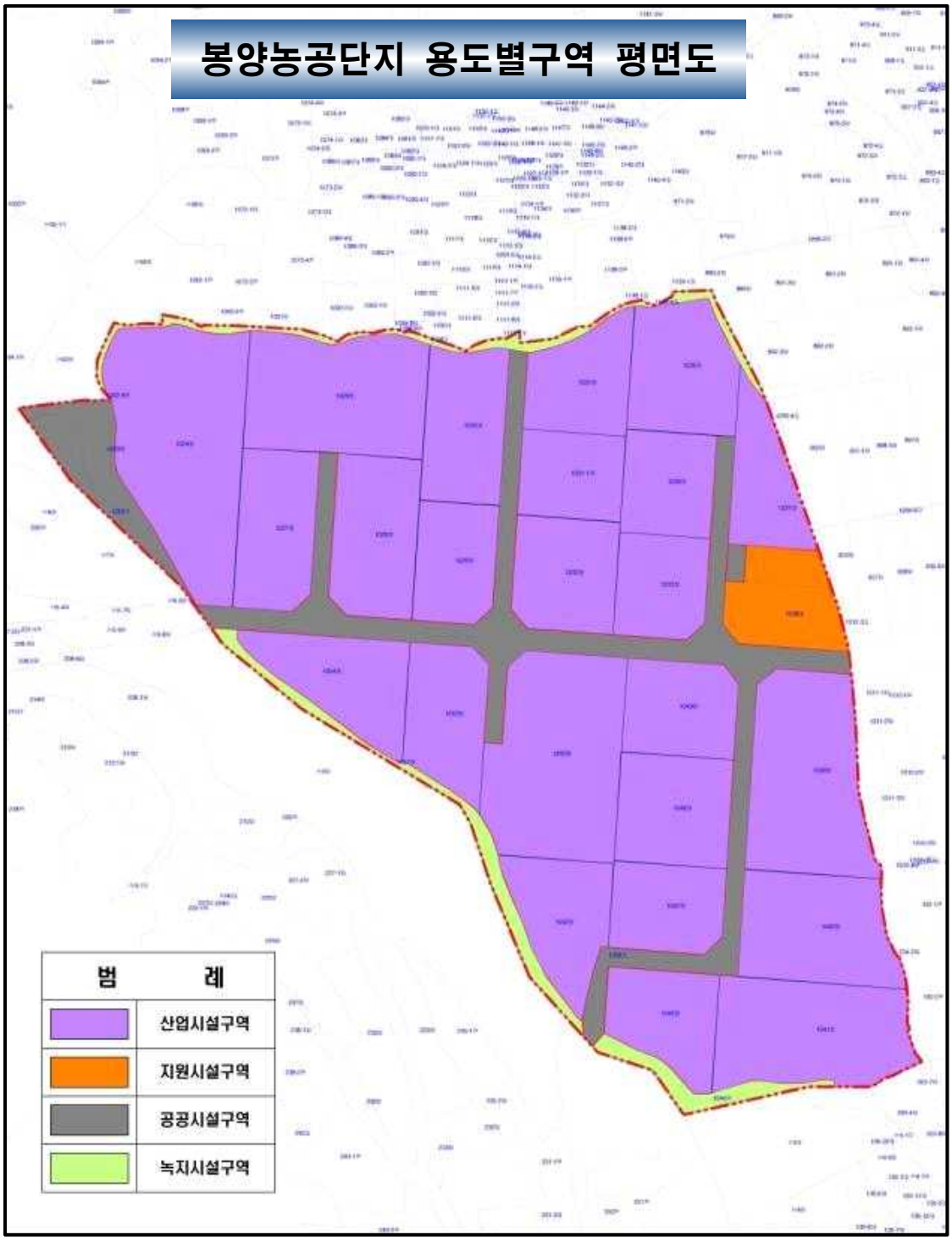
(기 정)

'17. 8. 현재				향 후 계 획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업체 수	면 적 (㎡)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입주업종중 제 외 업 종
계		24	158,675.4	■ 10. 식료품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한 제외업종 ■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10	식료품 제조업	2	11,747.3		
13	섬유제품 제조업	4	25,726.7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	5,951.3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	10,455.2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5,007.0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	20,875.4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	48,990.5		
28	전기장비 제조업	2	11,126.7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8,943.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5,553.5		
13 20	섬유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	4,2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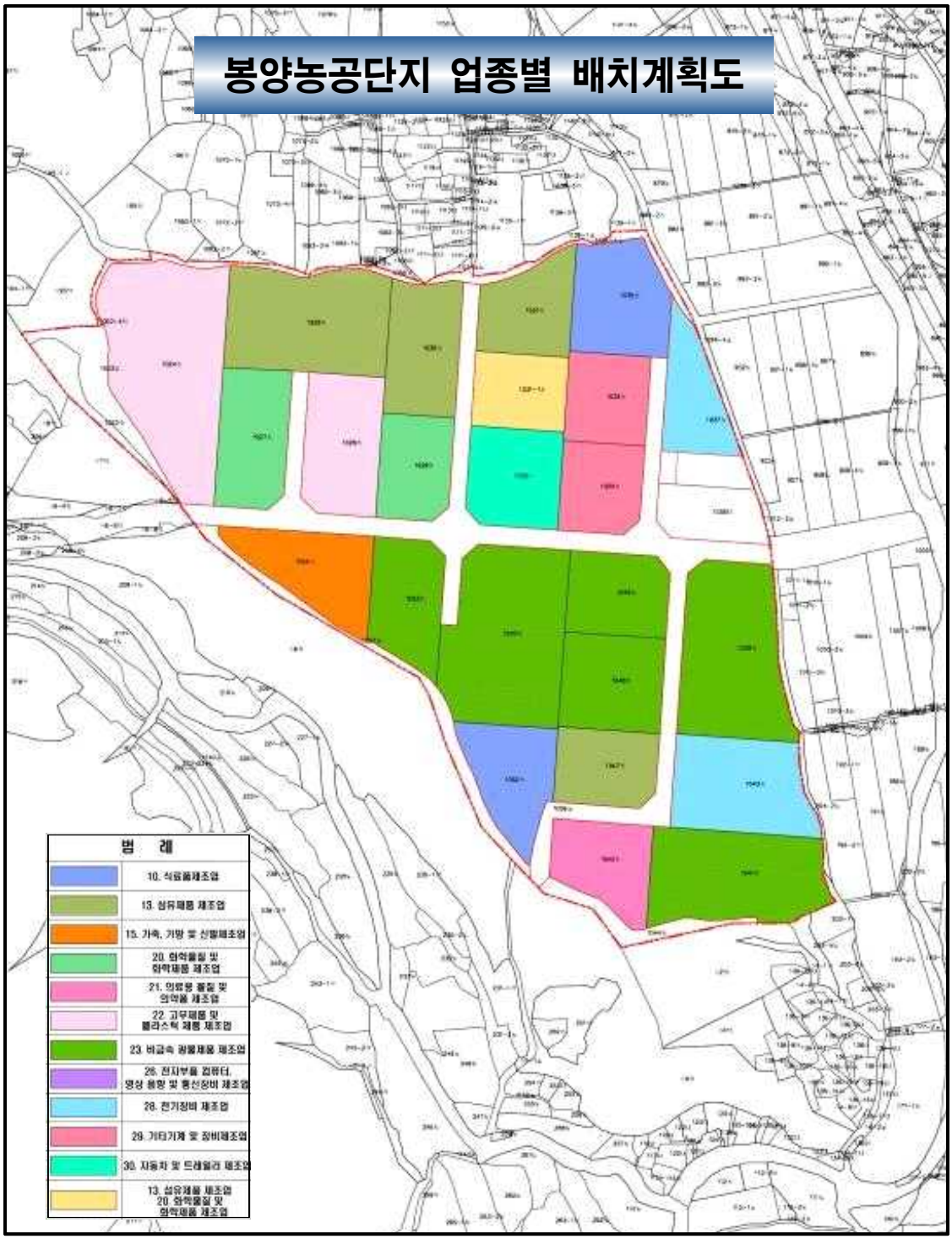
(변 경)

'19. 9. 현재			향 후 계 획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업체수	면 적 (㎡)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입주업종중 제 외 업 종
계	24	158,675.4	■ 10. 식료품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한 제외업종 ■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	11,747.3		
13 섬유제품 제조업	4	25,726.7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	5,951.3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	10,455.2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5,007.0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	20,875.4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	48,990.5		
28 전기장비 제조업	2	11,126.7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8,943.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5,553.5		
13 섬유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	4,298.0		

【별표 2】 용도별구역 평면도 [변경없음]



【별표 3】 업종별 배치계획도 [변경없음]



경상북도 고시 제2019 - 319호

의성군 단밀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성군 단밀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단밀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농공단지 일반현황

1. 농공단지 개요 [변경없음]

○ 명 칭 : 단밀농공단지

○ 위 치 :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31번지 일원

○ 면 적 : 144,346.2㎡

○ 관리기관 : 의성군수

(단위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면적 (%)	144,346.2 (100.0%)	105,194.9 (72.9%)	-	23,419.9 (16.2%)	15,731.4 (10.9%)	

2. 조성목적 [변경 없음]

○ 농촌의 농외소득 및 농가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지향적인 토지이용

3.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 없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1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1조 1항 1호 가목에 의한 공영개발

○ 기 간 : 2008년 ~ 2010년

4. 추진경위

○ 2008. 4. 10 : 농공단지 지정 승인 (의성군 고시 제2008-174호)

○ 2008. 9. 18 : 농공단지 지정 변경 승인 (의성군 고시 제2008-468호)

○ 2008. 11. 24 :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08-572호)

○ 2009. 2. 3 : 공사착공

○ 2009. 10. 28 : 분양공고 및 분양시작

○ 2009. 11. 2 :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9-476호)

○ 2010. 5. 24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0-199호)

○ 2010. 12. 28 : 공사준공

○ 2011. 2. 15 : 농공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승인(변경)고시 (의성군 고시 제2011-15호)

○ 2011. 4. 21 : 분양완료

○ 2011. 7. 14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1-267호)

5. 분양현황 [변경 없음]

구분	총면적(㎡)	분 양 현 황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 분 양	계		
계	144,346.2	105,194.9	-	105,194.9	2008 - 2010	의성군
산업시설	105,194.9	105,194.9	-	105,194.9		
지원시설	-	-	-	-		
공공시설	23,419.9					
녹지시설	15,731.4					

6. 입주현황 [변경]

구 분	입주업체 수(개)			면 적 (㎡)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변경전	11	-	11	105,194.9	-	105,194.9
'19. 9월 현재	13	-	13	105,194.9	-	105,194.9
향후계획	-	-	-	-	-	-

7. 입지여건 [변경]

시설명		변경전	2019. 9월 현재	관리기관
교통	도로	○중앙고속도로 의성IC, 상주IC, 선산IC 이용 ○국도 25호선 이용	○당진영덕고속도로 서의성IC(17㎞) 이용 ○중앙고속도로 의성IC(40㎞) 이용 ○상주영천고속도로 도개IC(27㎞) 이용 ○국도 25호선(구미 ↔ 상주)	
	철도	○중앙선 의성역	○중앙선 의성역	
	항공	○대구공항 이용	○대구공항 이용	
	항만	-	-	
용 수		○의성군 상수도	○의성군 상수도	의성군
전 력		○2,904㎾	○2,904㎾	한국전력공사
통 신		○KT의성지점	○KT의성지점	한국통신
환 경			○오·폐수 유입량 : 183㎥/일	의성군

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 지역 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주민 고용으로 농외 소득 증대

○ 농공단지 용도별 면적 구획으로 용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 환경보존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2. 농공단지 면적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총면적	산업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비고
144,346.2 (100%)	105,194.9 (72.9%)	23,419.9 (16.2%)	15,731.4 (10.9%)	

3. 입주대상 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 우선순위[변경]

○ 입주대상 업종 (별표 1) (변경)

■ (기정) : 전기、전자 제조업, 기계、조립금속 제조업, 기타 제조업등

(별표 1과 같음)

※ 단,「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변경) : 전기、전자 제조업, 기계、조립금속 제조업, 기타 제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등

(별표 1과 같음)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의 경우 신규 및 증설승인 불가

※ 단,「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입주대상 제외업종 (추가)

■ 환경영향업종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농공단지 입주 불가 사업장(「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수배출관련 업종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 5에 해당하는 업종

■ (별표1) 향후계획 입주업종 중 제외업종

※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 입주자격 (변경)

■ 환경성 및 사업성 적합 업체일 것

■ 별표1 입주제외 대상 업종이 아닐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입주 우선순위(변경 없음)

■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큰 업체

■ 재무구조가 건실한 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 유망업체를 우선 입주

■ 주변 업체와의 계열화 및 전문화가 가능한 업체

○ 사후관리계획(변경 없음)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인력수급의 원활한,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기술지도, 가동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독려 및 공해배출업체의 공해저감 유도

■ 근로자의 복지후생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행 유도를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

■ 분양용지의 불법 전매, 장기 유휴화 등의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철저

■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예방지도활동 강화

4. 생산 · 수출 및 고용전망[변경 없음]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생산활동 및 수출증대	○ 연도별 · 품목별 생산 · 수출계획 수립 ○ 생산 · 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 · 설명회등 개최 ○ 품목별 · 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 · 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경영 및 기술개발지원사업	○ 공장자동화 유도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고용전망 및 근로자 복지사업	○ 농가의 유휴노동력(주부, 고령자)의 흡수로 농외소득 증대 ○ 외국인 근로자 확보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 ○ 공익근무요원의 최대한 확보 지원(지방병무청과 협의) ○ 취업상담실 운영 ○ 유휴인력(주부, 고령자) 활용방안 강구 ○ 인근지역 인력수급을 위한 통근버스 공동이용 ○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행 유도를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

5. 임금 소득, 원자재 공급등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전망[변경 없음]

○ 농업외 수입에 의존하는 농가로 하여금 농외소득의 혜택으로 수입의 안정화 기대

■ 생산 · 일용근로자 지역주민 우선채용

■ 유휴노동력(부녀자 , 노령자, 실습생)의 적극적인 채용

○ 농번기에는 조업 방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노사간 화합 및 고용안정의 도모와 농외소득증대 효과의 극대화

○ 지역 원자재의 최대한 활용 : 농 · 식품류 우선공급

6. 입주 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 수급 전망[변경]

○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 수요 전망(변경)

입 주 업체수		고 용 인 원 (명)			비 고
		계	기능인력	단순노무	
기정	11	190	190	-	
변경	13	150	150	-	

※ 자료출처 : 의성군 경제투자과

○ 지역별 인력 수급 전망(농공단지 인근지역의 취업가능 인력 현황) (변경)

구 분	인 구 수(명)			취업가능인력 (추 정)
	계	농가인구수	비농가인구수	
기정	49,880	13,434	36,446	2,400
변경	55,888	24,550	31,336	2,700

※ 자료출처 : 의성군 통계연보(2015)

○ 관내 제조업체 현황 (변경)

구분		계	섬유	금속	화공	비금속	식품	기계	고무 플라 스틱	전자	목재 출판	기타
기정	업체수	131	13	3	4	8	67	10	-	1	3	22
	고용인원	1,302	290	151	39	173	280	248		7	3	111
변경	업체수	144	12	8	18	32	45	13	6	5	-	5
	고용인원	1,787	164	109	130	561	457	223	40	35	-	68

※ 자료출처 : 의성군 경제투자과

7.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 강화 방안[변경 없음]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생산및 수출증대	○ 연도별 · 품목별 생산 · 수출계획 수립 ○ 생산 · 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 · 설명회 등 개최 ○ 품목별 · 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 · 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경영 및 기술 개발지원사업	○ 공장자동화 유도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경쟁력 강화	○ 업체간 상호정보교환 및 제품 판매지원 ○ 업종별 · 품목별 공동브랜드 개발 ○ 물류공동화 추진 및 시설지원 ○ 공동전시 · 판매장 설치

8.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획 및 공장배치계획[변경]

○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획

(단위 : ㎡)

총면적	산업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비고
144,346.2 (100%)	105,194.9 (72.9%)	23,419.9 (16.2%)	15,731.4 (10.9%)	

○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표 2참조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 산업시설구역 (기정) :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 산업시설구역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구역 (기정) :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

■ 지원시설구역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지붕에 한함)

■ 공공시설구역 (변경없음)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녹지시설구역 (변경없음)

- 공원(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등

○ 업종별 공장배치계획(현황) 별표3참조

■ 소규모 단지이므로 입주 시 적정배치

■ 기존환경오염이 적은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전문화 유도를 위한 업종 배치

구 분		업 종 별			
		계	기계、조립금속	전기、전자	기타 제조업
기정	업체수(개수)	11	2	2	7
	면적(㎡)	105,194.9	14,824.6	7,277.4	83,092.9
변경	업체수(개수)	13	3	3	7
	면적(㎡)	105,194.9	14,824.6	7,277.4	83,092.9

9.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변경]

○ 기본방향

■ 입주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협동화, 자동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 생산활동지원 및 공공업무, 편익시설의 공간 제공

■ 입주업체간 협의회의 활성화로 협력 및 애로사항 공동해결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계획 (변경)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계획

(기 정)

위 치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31번지 일원 (054-830-6232)		
관리기관 운영기관	의성군 경제지원과 단밀농공단지협의회	관리인원	1명
차집방식	분 류 식	차집관로	주 관 거 : 300m
수처리방식	회분식(SBR) 활성슬러지법	슬러지처리방식	농축 ➡ 탈수
설계용량	200㎥/일	유 입 량	183.5㎥/일

(변 경)

위 치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31번지 일원 (054-830-6516)		
관리기관 운영기관	의성군 경제투자과 전문기관 위탁운영	관리인원	1명
차집방식	분 류 식	차집관로	주 관 거 : D300mm
수처리방식	SMMIAR 공법	슬러지처리방식	농축 ➡ 탈수 ➡ 위탁처분
설계용량	200㎥/일	유 입 량	183.5㎥/일

■ 목표년도 수질 현황(계획)

(기 정)

구 분		항 목 (단위 : ㎎/ℓ)				
		BOD	COD	SS	T-N	T-P
설계수질	유입수	200	200	200	40	20
	방류수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운영수질	유입수	140	140	140	28	14
	방류수	9	38	9	18	2
법정방류수질		30	40	30	60	8
방 류 수 역		수정천(소하천) → 낙동강				

(변 경)

구 분		항 목 (단위 : ㎎/ℓ)				
		BOD	COD	SS	T-N	T-P
설계수질	유입수	200	200	200	40	20
	방류수	8	15	5	13	0.3
운영수질	유입수	213	196	219	42.5	21.5
	방류수	1	1	1	2.24	0.05
법정방류수질		10	40	10	20	0.3
방 류 수 역		수정천(소하천) → 낙동강				

■ 운영계획

(기 정)

구 분		내 용	비 고
처리가능오염물질		BOD, COD, SS	오염물질 및 폐수발생량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의 내용으로 한다
유입기준	처리가능 오염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의거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가‘지역, 2,000㎥/일 미만)이하로 유입	
	처리불가능 오염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의거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특례‘지역, 2,000㎥/일 미만)이하로 유입	
	유 입 량	총 200㎥/일 이하	

(변 경)

구 분		내 용	비 고
처리가능오염물질		BOD, COD, SS	오염물질 및 폐수발생량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의 내용으로 한다
유입기준	처리가능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지역, 2,000㎥/일 미만)이하로 유입	
	처리불가능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특례‘지역, 2,000㎥/일 미만)이하로 유입	
	유 입 량	총 200㎥/일 이하	

10.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농공단지 관리계획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안전관리	○ 안전관리 예방점검 ○ 주요시설 경계 및 안전관리시설 확보
토지이용효율 극 대 화	○ 사업부진업체 정상화 추진 ○ 임의양도 및 불법임대 시정 ○ 공장용지 유휴화 방지 및 타용도 사용규제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환경보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
단지방위체계 향 상	○ 단지 방호체계 수립 ○ 지역단위 방위협의체 운영 참여 – 예비군, 민방위대 등 운영기관 협조

○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생산 및 수출증대	○ 연도별 · 품목별 생산 · 수출계획 수립 ○ 생산 · 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 · 설명회등 개최 ○ 품목별 · 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 · 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경영 및 기술 개발지원사업	○ 공장자동화 유도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 강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운영 자금융자지원	○ 기업 운영자금 부족업체 융자금 추천 지원 ■ 3억원 까지 융자금 추천 지원(매출규모별 차등지원) ■ 이자차액 1년간 3%지원(시,도비) ■ 매월 1 회 융자금 추천 지원(설,추석달은 제외)

1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12.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의성군 경제투자과(☏054-830-65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표 1】

입 주 대 상 업 종

(기 정)

'11. 7. 현재			향후계획	
입주업종 (산업중분류)	업체 수	면 적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입주업종중 제외업종
	11	105,194.9	계	(산업소분류)
■ 음、식료품 제조업(10~11)	1	10,258.7	■ 음、식료품 제조업(10~11) ■ 섬유제품 제조업(13) ■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1차 금속 제조업(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가구 제조업(32) ■ 기타 제품 제조업(33)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한 제외업종 ■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분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23)	5	67,681.1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2	14,824.6		
■ 전기장비 제조업(28)	2	7,277.4		
■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26)	1	5,153.1		

(변 경)

'19. 9. 현재				향 후 계 획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업체 수	면 적 (㎡)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입 주 업 종 중 제 외 업 종
계		13	105,194.9	■ 10. 식료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한 제외업종 ■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5 29	기계 · 조립금속 제조업	3	14,824.6		
26 28	전기 · 전자제조업	3	7,277.4		
	기타 제조업	7	83,092.9		

【별표 2】 용도별구역 평면도 [변경 없음]



【별표 3】 업종별 배치계획도 [변경없음]



경상북도 고시 제2019 -320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10. 24.

경 상 북 도 지 사

구분	하천명	점용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기간
					주 소	성 명	
당초	지방하천 (용전천)	보 설 치	〈취수보〉 L=91.5m, B=2.4m 영구 2,674.29㎡ 일시 1,997.29㎡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6-1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수 (환경축산과장)	영구: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허가일로부터 2020. 3. 30
변경			〈취수보〉 L=91.5m, B=2.4m 영구 2,127.34㎡ 일시 2,455.90㎡				

경상북도 고시 제2019 - 321호

각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각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 : 토사수로 구조물화 및 노후화된 용수로를 보수·보강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및 사전재해 예방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북 청도군 각남면 사리, 이서면 수야리, 청도읍 송읍리 일원

○ 수혜면적 : 419ha

○ 사업계획개요 : 용수로 6조 5,494m

3. 사업비소요액 : 2,665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2019. ~ 2021.

5. 사 업 효 과 : 노후된 수리시설물을 보수하여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사전재해 예방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7.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 054-819-6023)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19 - 3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같은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오산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위한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시점	종점	중 요 경과지	총연장 (km)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지방도	밀양~각북 902호선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청도 청도 · 각남 · 풍각 · 각북	33.9	-
변경	지방도	밀양~각북 902호선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청도 청도 · 각남 · 풍각 · 각북	33.9 (0.1116)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3. 접도구역의 지정조서

도로의 지정	지방도	노 선 명	밀양 - 각북 (902호선)
접도구역 또는 위치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ㅇ 시점 :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994-1 종점 :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997-1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4. 사업시행기간

○ 오산도로 선형개량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일로부터 ~ 12개월

5. 설계도서,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공람장소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 (☏054-880-823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 및 지형도면 등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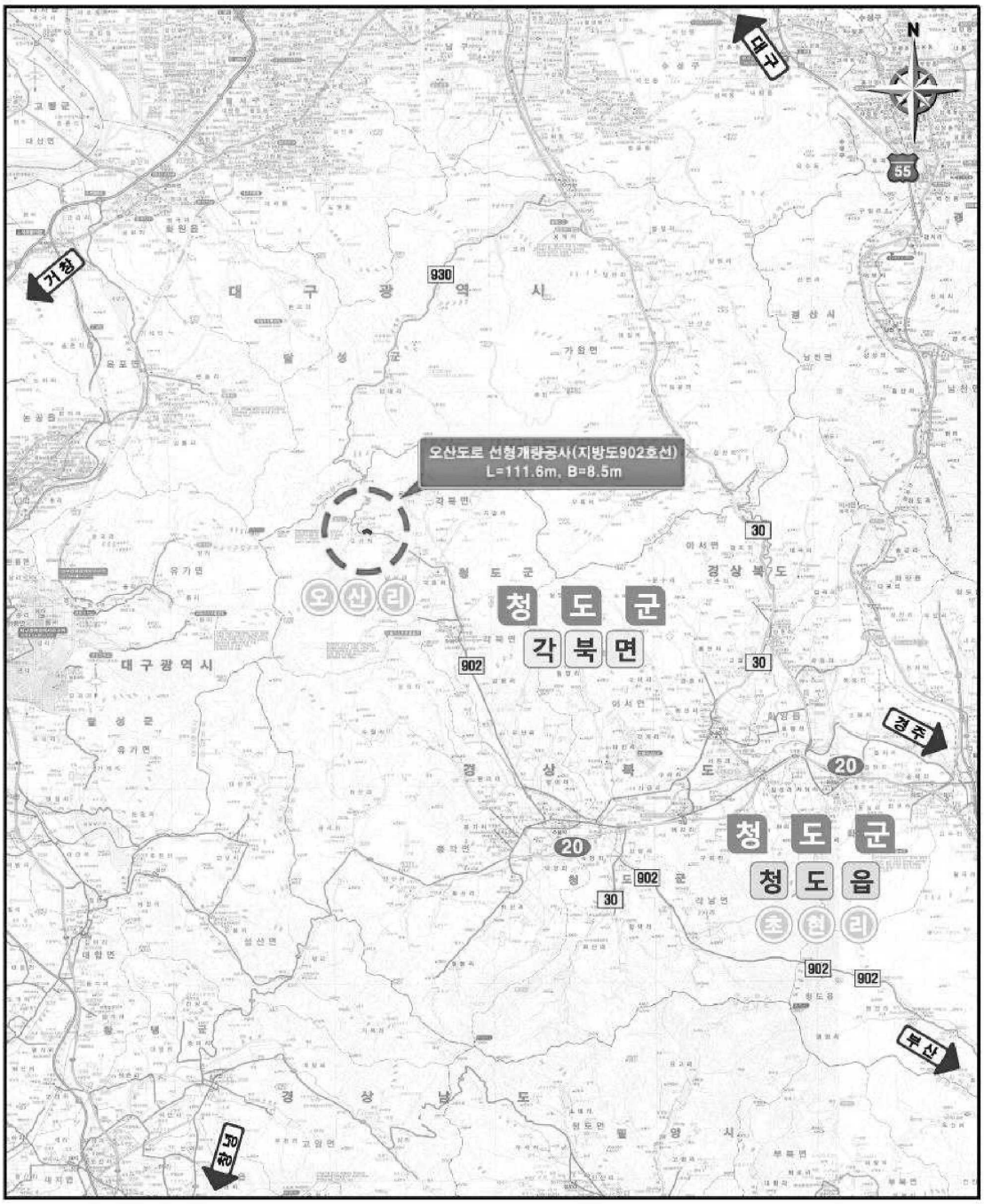
※ 첨부서류 : 5천분의 1 지형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성명	주소	
						76.100	1.321			
1	청도	각북	오산	997	답	2,957	410	석해선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5길 2	
2	청도	각북	오산	1272	천	72,552	396	국	국토교통부	
3	청도	각북	오산	996	답	465	389	이덕건	대구 달서구 용산동 419-1, 한마음타운 106-306	
4	청도	각북	오산	995-2	답	126	126	곽진우	청도군 각북면 오산동 868	

위 치 도

S = 1 : 25,000


N
대구
거창
930
55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가창면
오산도로 선형개량공사(지방도902호선)
L=111.6m, B=8.5m
오산리
청 도 군
각 북 면
902
30
경 상 북 도
대구광역시
유가면
경주
20
청 도 군
청 도 읍
초 현 리
902
부산
경 상 남 도
양 산 시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도엽번호 : NO.001



축 척 1 : 1,200

범 례

당초도로구역	
당초잡도구역	
변경도로구역	
변경잡도구역	

01

지정권자 : 경 상 북 도
지정일자 : 2019년 9월 일
고시년도 : 2019년 9월 일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19- 호
작성년월일 : 2019년 9월 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경 상 북 도

구 분	작성 및 확인자		결정권자	
	작성자	확인자	1차확인자	2차확인자
소 속	주식회사 건일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직 위	과 장			
직 명	-			
성 명	차 재 철	조 정 래		
확인인				

경상북도 고시 제2019 - 323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10. 24.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지방 하천 (미천)	보 설 치	〈주평보〉 L=64.5m, H=2.0m 영구 720㎡ 일시 4,703㎡	안동시 일직면 구천리 426-1번지 외 1필지	안동시 퇴계로 115 (명륜동)	안동시장 (건설과장)	영구: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허가일로부터 2020월 12월 31까지

◈◈◈

경상북도 공고 제2019 - 1707호

경상북도 금고 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및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금고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 경상북도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 지정사항

구 분	금융기관명	취급 회계
제1금고	NH농협은행	○ 일반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소방안전특별회계 ○ 통합관리기금
제2금고	DGB대구은행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치수사업특별회계 ○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 중소기업육성기금

□ 약정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경상북도 공고 제2019 - 1708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구 분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
전문 감리업	경북2019-6470000-86-22-00008호	㈜경안기술단	공명화	경북 안동시 퇴계로 135, 2층(명륜동)	'19.10. 22.

경상북도 공고 제2019 - 1709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양도·양수 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양도·양수 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양수인가 신청내용**

구 분	양 도 자	양 수 자	비고
설계업 (등록번호)	전문설계업1종 (경북5-67호)	전문설계업1종 (경북5-67호)	
업 체 명	㈜경안전기	㈜경안기술단	
대 표 자	공명화	공명화	
주소(소재지)	경북 안동시 퇴계로 135(명륜동)	경북 안동시 퇴계로 135, 2층 (명륜동)	
양수예정일	2019년 10월(양도·양수계약 : ’ 19. 9. 17.)		

◈◈◈

경주시 고시 제2019 - 166호

경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경주시 고시 제2019-162(2019.10.21.)호로 고시한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의 경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 결정(변경) 조서 상 오기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 10. 24.

경 주 시 장

1. 정정 고시사항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오기에 따른 조서 정정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	공공청사	공공청사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	-	증)24,022	24,022	-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경주시 고시 제2019-162(2019.10.21.)호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내용과 같음

영주시 고시 제2019-1033호

영주 도시계획시설사업(가흥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영주 가흥공원 내 휴게음식점(북카페) 및 대기오염측정소 조성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4.

영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산45-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가흥공원)

나. 명칭 : 휴게음식점(북카페) 및 대기오염측정소 조성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사업면적 및 규모

구 분	사용할 토지 편입면적(㎡)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 연면적(㎡)	비고
기정	9,470	2,090	697.10	1,338.00	
변경	감) 216	400	251.71	259.84	금회 증축
변경후	9,254	2,490	948.81	1,597.84	

나. 건축개요

구 분	층별	용도	바닥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	1,597.84	948.81	
도서관	1층	교육연구시설(도서관)	668.55	697.10	기존
	2층	교육연구시설(도서관)	669.45		
	소계	-	1,338.00		
휴게음식점 (북카페)	1층	휴게음식점	149.22	233.71	금회증축
	2층	휴게음식점	92.62		
	소계	-	241.84		
대기오염 측정소	1층	측정소	18.00	18.00	금회증축
	소계	-	18.00		

4. 사업시행자

가. 성명 : 영주시장

나. 주소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5. 사업기간(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조서 참조

※ 관계도서는 영주시청 산림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소	성명	
1	영주시 가흥동	산45-7	임	56,577	2,075	감)59	2,016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장	
2		385-1	대	7,395	7,395	감)157	7,238			
계				63,972	9,470	감)216	9,254			

영천시 고시 제2019 - 104호

영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망정동 및 도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 10. 24.

영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남 부 가압장	영천시 도동 755-10번지 일원	-	증) 7,843.56	7,843.56	-	
신설	3	망 정 배수지	영천시 망정동 산14-5번지 일원	-	증) 2,035	2,035	-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관계도서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054-330-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고시 제2019 - 170호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및 북삼읍 인평리 일원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칠 곡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석전리 고지마을지구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2	석전리 고지마을	왜관읍 석전리 53 일원	60,911	-	60,911	칠곡군 고시 제2018-30호 (2018.02.22)	왜관읍 도시지역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계획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0,911	-	60,91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911	-	60,911	10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변경)

(1)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4	1,162	6,967	–	–	–	–	–	–	4	1,162	6,967
대 로	–	–	–	–	–	–	–	–	–	–	–	–
중 로	–	–	–	–	–	–	–	–	–	–	–	–
소 로	4	1,162	6,967	–	–	–	–	–	–	4	1,162	6,967

(2)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 계	4개 노선				–	1,167 (1,162)	–	–	–	–	–	( )안은 구역내
기정	소로	3	165	6	국지도로	316	석전리 산19-2 (대로 3-2)	석전리 27 (소로3-166)	일반도로	–	칠곡군 고시 제2018-30호 (2018.02.22)	
기정	소로	3	166	6	국지도로	498 (493)	석전리 43-2 (대로 3-2)	석전리 27 (소로 3-165)	일반도로	–	칠곡군 고시 제2018-30호 (2018.02.22)	
기정	소로	3	167	6	국지도로	192	석전리 산19-3 (소로 3-165)	석전리 46-2 (소로 3-166)	일반도로	–	칠곡군 고시 제2018-30호 (2018.02.22)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소로	3	167	6	국지도로	343	석전리 818 (소로 3-166)	석전리 46-2 (소로 3-166)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3	168	6	국지도로	146	석전리 산92 (소로 3-167)	석전리 818 (소로 3-166)	일반도로	-	칠곡군 고시 제2018-30호 (2018.02.22)	
신설	소로	3	168	4	특수도로	10	석전리 산19-5 (소로 3-165)	석전리 산19-5 (소로 3-167)	보행자 전용도로	-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67호선	소로 3-167호선	•선형변경 L=192→343m (증 151m)	지형현황 및 사유지 편입 등을 고려하여 도로 개설이 어려운 일부 구간 선형변경
소로 3-168호선	-	•노선폐지 B=6m, L=146m	소로 3-167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폐지
-	소로 3-168호선	•노선신설 B=4m, L=10m	거주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도로 신설

나)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 개소	-	690	-	690	-	
기정	6	노외 주차장	석전리 49번지 일원 (소로3-166호선변)	690	-	690	칠곡군 고시 제2018-30호 (2018.02.22)	

2) 공간시설 (변경없음)

가)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 개소	-	-	873	-	873	-	
기정	22	석전 공원	소공원	석전리 41번지 일원 (소로3-166호선변)	873	-	873	칠곡군 고시 제2018-30호 (2018.02.22)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주거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계		52,381	-	52,381	
A1	A1	25,117	석전리 산17-3번지 일원	25,117	
A2	A2	7,902	석전리 38번지 일원	7,902	
A3	A3	13,189	석전리 52번지 일원	13,189	
A4	A4	6,173	석전리 28-4번지 일원	6,173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주거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4	A1 ~ A4	용 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 권장 • 벽면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게 설치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권장 • 경사형 지붕,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색 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건물외벽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전지역	교통처리계획	• 교통처리계획은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에 따름	
		간판 및 옥외광고물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은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름	

《인평2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4	인평2 지구단위 계획구역	북삼읍 인평리 430-7	49,966	-	49,966	칠곡군 고시 제2018-30호 (2018.02.22)	북삼읍 도시지역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계획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9,966	-	49,96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9,966	-	49,966	10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변경)

(1)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6	1,070	12,002	1	343	6,889	4	602	4,781	1	125	332
대 로	-	-	-	-	-	-	-	-	-	-	-	-
중 로	2	353	6,933	1	343	6,889	1	10	44	-	-	-
소 로	4	717	5,069	-	-	-	3	592	4,737	1	125	332

(2)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 계		6개 노선			-	2,749 (1,070)	-	-	-	-	-	( )안은 구역내
기정	중로	1	2	20	보조 간선 도로	1,539 (343)	인평리 396-5 (대로 1-1)	숭오리 346-6 (중로 1-24)	일반 도로	고속 철도	경고제316호 (1976.12.31)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493 (10)	인평리 434-22 (중로 1-2)	인평리 637-1 (중로 1-3)	일반 도로	소로 1-2 교차	경고제97호 (1978.04.08)	가각 일부 포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0	8	국지도로	339	인평리 434-6 (중로 2-2)	인평리 417-7 (소로 3-8)	일반도로	소로 2-91 교차	칠곡군 고시 제2018-30호 (2018.02.22)	
기정	소로	2	91	8	국지도로	125	인평리 430-12 (중로 1-2)	인평리 430-3 (소로 1-1)	일반도로	소로 2-90 교차	칠곡군 고시 제2018-30호 (2018.02.22)	
기정	소로	2	92	8	국지도로	128	인평리 430-12 (중로 1-2)	인평리 430-3 (소로 1-1)	일반도로	소로 2-90 교차	칠곡군 고시 제2018-30호 (2018.02.22)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25	인평리 417-25 (중로 1-2)	인평리 417-46 (소로 1-1)	일반도로	근린 상업지역	경고제97호 (1978.04.08)	구역내 B=2.5m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주거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계		37,964	-	37,964	
A1	A1	6,721	인평리 437-3번지 일원	6,721	
A2	A2	10,681	인평리 430-4번지 일원	10,681	
A3	A3	6,685	인평리 417-3번지 일원	6,685	
A4	A4	3,809	인평리 437-5번지 일원	3,809	
A5	A5	6,155	인평리 429-7번지 일원	6,155	
A6	A6	3,913	인평리 417-7번지 일원	3,913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주거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6	A1 ~ A6	용 도	허 용 용 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 권장 • 벽면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게 설치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권장 • 경사형 지붕,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색 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건물외벽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전지역	교통처리계획	• 교통처리계획은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에 따름	
		간판 및 옥외광고물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은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름	

3.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칠곡군 도시계획과(☏ 054-979-681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고시 제2019 - 171호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지천면 낙산리, 연호리 일원의 군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칠 곡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해제입안신청 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

명화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 개 소	-	145,717	-	145,717	-	
기정	1	가무실	지천면 낙산리 277 일원	61,715	-	61,715	경고제109호 (2006.04.06)	
기정	2	납실	지천면 연호리 670 일원	84,002	-	84,002	경고제109호 (2006.04.06)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무실지구]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1,715	-	61,71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6,924	-	60,911	93.1	
	4,251	-	4,251	6.9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m)	노선수	연 장 (m)	노선수	연 장 (m)	노선수	연 장 (m)
합 계	8	1,665	1	584	-	-	7	1,081
소 로	8	1,665	1	584	-	-	7	1,081

(나) 도 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1,742						
소계		1개 노선				584						
기정	소로	1	가1	10	국지도로	584	낙산리 680	낙산리 671	일반도로	소로3-가3 시점	경고제109호 (06. 4. 6)	
소계		7개 노선				1,081						
기정	소로	3	가1	6	국지도로	162	낙산리 226-5 (소로 1-가1)	낙산리 산145	일반도로	소로3-가2 시점	경고제109호 (06. 4. 6)	
폐지	소로	3	가2	6	국지도로	77	낙산리 226-5 (소로 3-가1)	낙산리 268-4 (소로 3-가3)	일반도로	-	경고제109호 (06. 4. 6)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가3	6	국지도로	340	낙산리 678(소로 1-가1)	낙산리 671(소로 3-가7)	일반도로	-	경고제109호(06. 4. 6)	
기정	소로	3	가4	6	국지도로	91	낙산리 258-4(소로 1-가1)	낙산리 262-1(소로 3-가3)	일반도로	소로3-가5 시점	경고제109호(06. 4. 6)	
기정	소로	3	가5	6	국지도로	91	낙산리 260-3(소로 3-가4)	낙산리 257-4(소로 3-가6)	일반도로	-	경고제109호(06. 4. 6)	
기정	소로	3	가6	6	국지도로	144	낙산리 671(소로 1-가1)	낙산리 671(소로 3-가3)	일반도로	소로3-가5 종점	경고제109호(06. 4. 6)	
기정	소로	3	가7	6	국지도로	168	낙산리 671(소로 1-가1)	낙산리 671(지방하천 7)	일반도로	-	경고제109호(06. 4. 6)	
기정	소로	3	가8	6	국지도로	85	낙산리 253-6(소로 1-가1)	낙산리 671(소로 3-가7)	일반도로	-	경고제109호(06. 4. 6)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가2호선	-	· 노선폐지 B=6m L=77m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해제신청이 있어 노선을 폐지함

2)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하 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폭원(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계	1개소						0.234	-	1,967		
기정	1	연호천	지방하천	낙산리 226-5 (소로 3-가1호 선변)	낙산리 산145 (소로 3-가1호 선변)	-	0.234	-	1,967	경고제109호 (06. 4. 6)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277번지 일원	용 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 권장 · 8m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의 담장은 식재 담장 및 투시형 담장으로 높이 1.5m이하 설치 권장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벽면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게 설치, 가각에 접한 대지는 도로에 일치되게 설치 권장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권장 · 경사지붕 설치 권장 ·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 옹벽 축조시 요철에 의한 패턴형성 등 미관을 고려한 축조 권장
		색 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 축 한 계 선	· 소로3-가2호선변 : 폭 2m **· 소로3-가2호선 노선폐지에 따른 건축한계선 폐지**
			· 소로3-가3호선변 : 폭 2m
			· 소로3-가6호선변 : 폭 2m
			· 소로3-가8호선변 : 폭 2m

라.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납실지구]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4,002	-	84,022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81,951	-	81,951	97.6	
자연녹지지역	2,051	-	2,051	2.4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m)	노선수	연 장 (m)	노선수	연 장 (m)	노선수	연 장 (m)
합 계	10	2,569	1	396	1	326	8	1,759
소 로	10	2,569	1	396	1	326	8	1,759

(2)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2,569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계		1개 노선				396						
기정	소로	1	납1	10	국지도로	396	연호리 880-1 (소로 1-1)	연호리 757	일반도로	소로3-납2 교차	경고제109호 (06. 4. 6)	
소계		1개 노선				326						
기정	소로	2	납1	8	국지도로	326	연호리 880-1 (소로 1-납1)	연호리 산112-1	일반도로	-	경고제109호 (06. 4. 6)	
소계		8개 노선				1,759						
기정	소로	3	납1	6	국지도로	299	연호리 757 (소로 1-납1)	연호리 880-1 (소로 2-납1)	일반도로	소로3-납2 교차	경고제109호 (06. 4. 6)	
기정	소로	3	납2	6	국지도로	304	연호리 664-1 (소로 3-납4)	연호리 880-1 (지방하천 7)	일반도로	소로3-납1 교차	경고제109호 (06. 4. 6)	
변경	소로	3	납2	6	국지도로	40	연호리 664-1 (소로 3-납4)	연호리 905 (소로 1-납1)	일반도로		경고제109호 (06. 4. 6)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납8	6	국지도로	176	연호리 900 (소로 3-납1)	연호리 880-1 (지방하천 7)	일반도로	소로2-납1 교차	경고제109호 (06. 4. 6)	
기정	소로	3	납3	6	국지도로	58	연호리 905 (소로 1-납1)	연호리 682-1 (소로 3-납1)	일반도로	-	경고제109호 (06. 4. 6)	
기정	소로	3	납4	6	국지도로	341	연호리 912 (소로 1-납1)	연호리 758 (소로 1-납1)	일반도로	소로3-납2 시점	경고제109호 (06. 4. 6)	
기정	소로	3	납5	6	국지도로	297	연호리 912 (소로 3-납4)	연호리 912 (소로 3-납4)	일반도로	-	경고제109호 (06. 4. 6)	
기정	소로	3	납6	6	국지도로	461	연호리 880-1 (소로 1-납1)	연호리 922	일반도로	-	경고제109호 (06. 4. 6)	
기정	소로	3	납7	6	국지도로	87	연호리 536 (소로 3-납6)	연호리 922	일반도로	-	경고제109호 (06. 4. 6)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납2호선	소로3-납2호선	·노선 분리에 따른 노선축소 B=6m, L=304→40m(감264m)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해제신청이 있어 일부구간을 폐지함에 따라 노선이 축소됨
소로3-납2호선	소로3-납8호선	·노선 분리에 따른 노선신설 B=6m, L=176m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해제신청이 있어 일부구간을 폐지함에 따라 노선이 축소됨

2)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하 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폭원(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계	1개소						0.234	-	1,967		
기정	2	납실천	소하천	연호리 900 (소로 3-납1호선변)	연호리 900 (소로 3-납1호선변)	-	0.234	-	2,051	경고 제109호 (06. 4. 6)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2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670번지 일원	용 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 권장 · 8m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의 담장은 식재 담장 및 투시형 담장으로 높이 1.5m이하 설치 권장 · 벽면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게 설치, 가각에 접한 대지는 도로에 일치되게 설치 권장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권장 · 경사지붕 설치 권장 ·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 옹벽 축조시 요철에 의한 패턴형성 등 미관을 고려한 축조 권장
		색 채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 축 한 계 선	· 소로3-납2호선변 : 폭 2m **· 소로3-납2호선 노선분리에 따른 일부구간 폐지**
			· 소로3-납4호선변 : 폭 2m
			· 소로3-납8호선변 : 폭 2m (노선분리에 의한 신설노선)

라.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1	12	보조간선도로	501	석전리 산64-7 (대로 3-2)	석전리 726-32 (중로 3-10)	일반도로	중로2-2 교 차	경고 제316호 (76.12.31)	
변경	중로	3	11	12	보조간선도로	179	석전리 산64-7 (대로 3-2)	석전리 740-9 (중로2-2)	일반도로	-	경고 제316호 (76.12.31)	
신설	중로	3	31	12	집산도로	133	석전리 726-32 (중로 3-10)	석전리 726-28 (소로1-8호선)	일반도로	-	경고 제316호 (76.12.31)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391	석전리 726-28 (중로 3-11)	석전리 835-17 (소로 1-9)	일반도로	석전리 주거지역	경고 제167호 (78. 6. 7)	
변경	소로	1	8	10	국지도로	391	석전리 726-28 (중로 3-31)	석전리 835-17 (소로 1-9)	일반도로	석전리 주거지역	경고제 167호 (78. 6. 7)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3-11호선	중로3-11호선	·노선분리에 의한 노선축소 B=12m, L=501m→179m (감327m)	·일부구간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이 있어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노선의 일부구간을 폐지함에 따라 노선이 축소됨
중로3-11호선	중로3-31호선	·노선분리에 의한 노선신설 B=12m, L=133m	·일부구간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이 있어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노선의 일부구간을 폐지됨에 따라 노선이 신설됨.
소로1-8호선	소로1-8호선	·도로모퉁이변 조정	·장기미집행시설 변경에 따른 연계도로의 도로모퉁이변 조정

5.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이해관계인은 칠곡군 도시계획과(☏ 054-979-681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안동시 공고 제2019-1921호

안동 도시계획시설(안교어린이공원) 사업 공사완료 공고

안동 도시계획시설(안교어린이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되었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안 동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48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명 칭 : 안교어린이공원 조성공사

3. 사업의 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성 명 : 안 동 시 장

나. 주　소 :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명륜동)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전체 사업부지 면적 : 2,655㎡

나. 금회 사업부지 면적 : 2,655㎡

구 분	총면적(㎡)	금회 사업면적(㎡)	비 고
합 계	2,655	2,655	
도로 및 광장	787	787	
조경시설	67	67	
휴양시설	102	102	
유희시설	284	284	
운동시설	236	236	
녹지	1,179	1,179	

5. 시행기간 : 2017. 12. 14. ~ 2019. 12. 31.

6. 공사 완료일 : 2019. 5. 27.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공원녹지과(☏054-840-540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영덕군 공고 제2019 - 989호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영덕군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시행코자 관광진흥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도서의 공람과 의견청취코자 하오니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24.

영 덕 군 수

1. 조성계획 변경내용

○ 사 업 명 : 고래불 관광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 영해면 대진리 일원

○ 사업면적 : 880,400㎡(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영덕군

○ 사업기간 : 1997년 ~ 2021년(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시설물설치계획 변경 및 사유

구 분	건축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9,737.04	96,595.03	증)332.1	30,069.14	96,927.13	
공공편익 시설지구	1,762.28	2,016.10		1,762.28	2,016.10	• 변경없음
숙박시설 지구	7,980	49,496	-	7,980	49,496	• 변경없음
상가시설 지구	7,110	15,510	-	7,110	15,510	• 변경없음
운동·오락 시설지구	6,300	17,701	증)332.1	6,632.1	18,033.1	• 스포츠센터 신설 (1동/1,341㎡)
휴양·문화 시설지구	6,584.76	11,871.93	-	6,584.76	11,871.93	• 변경없음
기타시설 지구	-	-	-	-	-	• 변경없음

2. 공람 및 의견청취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3. 공람 및 의견청취기관 : 영덕군청 문화관광과(☎054-730-6392)

※ 관계서류 및 도면 게재생략

4. 공람장소 및 관계도서 비치 :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병곡면사무소

5.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까지 의견서를 영덕군청문화관광과(☎054-730-639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604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9. 10.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305-1번지 일원 면적 : 2,543㎡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다산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시설개요 : 암거 L=5m(2m*2m*3.0m), U형측구 L=8.5m(6.6m*2.2m) 강관압입(1,800㎜ 3련, 그라우팅 포함), 토사측구 L=95m 기존배수장 철거 1식
점용 기간	당초 : 2014년10월14일부터 2019년10월13일까지 **변경 : 2017년10월14일부터 2024년10월13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605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9. 10.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538-2번지 일원 면적 : 1,703㎡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오사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시설개요 : 토출관로(B=2.5m, H=2.5m, L=20m)1련
점용 기간	당초 : 2014년10월18일부터 2019년10월17일까지 **변경 : 2019년10월18일부터 2024년10월17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606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9. 10. 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71번지 일원 면적 : 295㎡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구곡배수장 토출관로 설치 시설개요 : 토출관로(B=2.5m, H=2.5m, L=46m)1련
점용 기간	당초 : 2014년10월18일부터 2019년10월17일까지 **변경 : 2019년10월18일부터 2024년10월17일까지**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